더불어 사는 생활공동체

제38차 (법인 제 24차)
정기 대위원총회 자료집

총회일 : 2023년 2월 18일(토)

장　소 : 만안구청 본관 강당(3층)

시　간 : 오전 10시

바른두레생협

www.baruncoop.co.kr

더불어사는 생활공동체

제38차(법인24차) 정기 대의원총회
자 료 집

▶ 총회일 : 2023년 2월 18일
▶ 장 소 : 안양시 만안구청 대강당

바른두레생협

협동조합의 정의 · 가치 · 운영원칙

✓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를 말한다.

✓ 기본적 가치

- 자조(Self-help)
-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 민주주의(democracy)
- 평등(equality)
- 공정(equity)
- 연대(solidarity)

✓ 윤리적 가치

- 정직(honesty)
- 공개(openness)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for others)

✓ 운영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목 차

1. 연혁 ---------- 5

2. 제37차(법인23차) 정기총회 의사록 ---------- 8

3. 의안 심의

제1호의안 2022년도 종합 감사보고 승인의 건 ---------- 11

제2호의안 2022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리(안) 승인의 건 ---------- 14

제3호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53

제4호의안 2023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 67

제5호의안 안양본점 등기이전의 건 ---------- 68

제6호의안 임원선출 및 승인의 건 ---------- 69

제7호의안 바른두레생협 정관변경(안) 승인의 건---------- 71

4. 바른두레생협 정관 ---------- 77

바른생협 설립 취지문

현재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상품의 홍수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물자는 언제든지 가까운 시장이나 상점에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엄청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과 강이 오염되어 새가 죽고 등이 굽은 물고기가 생겨났습니다.
땅이 죽어 농산물이 오염되고 마음 놓고 마실 물, 숨 쉴 공기조차 찾기 힘들 지경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의 편리와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편리와 풍요만을 위해 우리들은 돈과 물질을 가장 우선시 하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우리 생존의 터전인 자연이 파괴되어도 상관없었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불신과 경쟁도 서슴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활양태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공생, 이웃 간의 신뢰회복, 협동적인 생활공동체 형성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진실로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 만드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바른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환경에 이로우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와 생활물자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을 협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생활물자에 바로 협동과 공생의 의미를 담아낼 것입니다. 또한 생활물자의 개발과 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바른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들이 모인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이에 바른생활협동조합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2000년 2월 28일 / 바른생활협동조합 법인설립발기인회

바 른 두 레 생 협 이 걸 어 온 길

	5월 13일	발기인회 개최
1985년	**5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임원진 구성(56명 참석)**
	12월 18일	소협 중앙회 회원조합(제5-3호)으로 가입
1986년	5월 29일	제2차 정기총회 개최
	2월 11일	국민일보 보도 "무점포 소협으로 성공"
1987년	3월 3일	소협중앙회 2차 정기총회에서 우수조합으로 수상
	3월 23일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생협 전국연합회) 가입
1988년	5월 29일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9년	5월 29일	제5차 정기총회 개최
	3월 16일	**제1차 도농 만남의 잔치 개최(속달리 납작골, 80명 참가)**
	4월 10일	**바른생협 회보 창간호 발행(더불어사는 생활공동체)**
1990년	6월 1일	중앙회 사업부 당 조합 사무실로 이전 업무개시
	8월3~5일	일본 생활클럽생협 지바조합 한국연수단 조합원 집에서 민박
	8월 17일	사무실 이전 안양3동 695-52(지하 50평)
	12월 31일	**사업자 등록(123-82-04867)**
1991년	1월28~2월3일	일본 생활클럽 생협 연수 조합원 11명 참가
	10월5~6일	천주교구수원교구 여성연합회 주최 "사랑의 바자회"참가
	1월 1일	폐품 재활용 운동 전개(우유팩 모으기, 폐식용유 모으기, 건전지 수거)
1992년	1월 19일	산친구들(산악회) 수리산으로 첫나들이
	2월 14일	제1회 살림강좌 개최 "여성시대" 김영주
	6월 12일	안양5동 627-176 사무실 개소식
	2월 2일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 가입
1993년	3월 7일	우리밀밭 밟기 조합원 가족나들이 개최
	6월	안양생활소비자협동조합 명칭 바른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
1994년	4월 16일	안양지역 지구의 날 행사 참여
1995년	2월 22일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1996년	**4월 9일**	**산본지소 개소**
	1월 20일	생활재위원회 시작
	4월	지역모임 시작
	5월 30일	**산본지소 폐쇄**
1997년	8월 24일	상주「땅을 지키는 모임」견학 후 수재의연금 전달
	11월	어린이 겨울캠프 개최(장소:원주생협)
	6월 13일	단오절 행사 경기도 남양에서 개최(바른, 안양Y생협)
	11월 29일	공동구입 부분 수도권연합회 사무실로 이전(시흥시 목감동)
	12월 5일	**신규 점포 오픈(안양5동 627-102, 30평)**
2000년	**2월 28일**	**바른생활협동조합 법인 창립 총회**
	7월 23일	신규조합원 이용설명회
2001년	8월1~4일	생활재위원 일본 그린코프생협 연수
	12월 5일	홈페이지 개설(baruncoop.or.kr)
	1년24~25일	어린이 겨울캠프 진행
	4월 11일	매장위원회 시작(안양)
2002년	**6월 6일**	**바른생협인 한마당 개최**
	10월 2일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벼 재배 규탄 시민대회 참가
	10월 13일	우리쌀지키기 만민공동회 참가
2003년	1월 15일	아토피소모임 시작

	2월 26일	18차 정기총회 개최
	3월 17일	청계산 생태공부 모임 시작
	5월 31일	**영통매장 개점**
	10월 16일	생협전국연합회 2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 수상
2004년	2월 24일	제19차(법인 5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8월20~22일	어린이 여름캠프
	12월 10일	안양매장 5주년 기념행사
	5월 22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2005년	5월 17일	영통매장 이전 및 행사
	9월 23일	안양 어린이생태교육모임 진행
	12월 16일	안양매장 이전 및 행사
	5월 10일	**홍성 장곡면 대현리 마을과 자매결연식 체결**
2006년	**6월 28일**	**평촌매장 개점**
	7월22일~24일	홍성 정다운 농장에서 어린이 여름캠프 진행
	1월 3일~5일	**홍성 생산자 자녀 초대 겨울캠프**
2007년	**7월 11일**	**천천매장 개점**
	10월 1일~22일	활동가 양성교육 4회 진행
	1월~2월	**서해안 기름제거 활동전개(총 5회)**
2008년	**5월 31일**	**전·현직 임직원 만남의 날 개최**
	8월 25일	**동탄매장 개점**
	5월 13일	**인덕원매장 개점**
2009년	**11월 4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 자매결연 및 조인식**
	12월 9일	제주생산지에 도서 및 의류보내기 활동 전개
	12월 10일~11일	**상주 여성생산자와의 교류회**
	2월 18일	**복지를 생각하는 모임 시작**
	5월 5일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2010년	7월 3~4일	성주 참외생산지 일손돕기
	9월 8일	**매탄매장 개점**
	11월 24일	평촌매장 확장 이전식
	3월 21일	일본지진피해 돕기 모금활동 전개
2011년	5월 20일	생산지 일손돕기 활동시작(총 5회 진행)
	11월 19일	김장나눔행사
	11월 23~27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3차 교류회
	2월 22일	**바른생협에서 바른두레생협으로 명칭 변경**
2012년	3월 21일	반찬나눔 활동시작
	6월 28일	**산본매장 개점**
	11월 3일	안양지역 협동조합 한마당
	5월 30일	안양지역 협동조합 한마당
	6월 4일	동탄점 이전 행사
	7월 1~2일	천천점 이전행사
2013년	7월 21~24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의 어린이 캠프 충남 홍성에서 진행
	7월 25~28일	후쿠시마 리프레쉬 투어
	10월 17일	경기지역 협동조합연합회 창립
	11월 6~10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정기교류 및 후쿠시마 부흥지원행사 참가
2014년	7월 23~26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과의 어린이 캠프 일본 가나가와에서 진행
	8월 18일	**호매실매장 개점**

	11월 28~30일	일본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후쿠시마 부흥지원행사 참가
	5월 21일	**창립30주년 기념식**
2015년	**7월 4일**	**창립30주년 심포지움(킨텍스)**
	8월 25일	영통매장 정육코너 입점(홍성유기농)
	8월 28일	숍&숍 따복공동체 입점(영통점, 평촌점, 동탄점, 인덕원점, 호매실점)
2016년	12월 31일	호매실점 폐쇄(숍&숍 따복공동체 폐쇄)
2017년	6월 30일	숍&숍 따복공동체 입점 (안양점)
	6월 30일	산본점 폐쇄
	11월	협성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
2018년	3월 21일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협약
	5월 16~17일	창립33주년 기념행사
	5월 30일	숍&숍 따복공동체 입점 (천천점)
	8월	매탄점 공유냉장고 운영
	10월 15일	수원시 생명산업과 업무협약
	12월 24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2019년	03월 01일	숍&숍 따복공동체 입점 (매탄점)
	05월 25일	안양점, 영통점 외 5개 매장 법인지점등기 완료!(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매장)
	06월 04일	동탄점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완료!
	07월 22일	동탄 매장 '생협플러스' 운영 업무 협약
	10월 17~19일	일본가나가와생활클럽 교류
2020년	5월 21일~22일	35주년 기념 비타민 나눔기부 행사
	6월 10일	**본부 사무실 이전**
	6월~12월	사회적 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사업 1단계 확정
	7월	농식품진흥원 먹거리 보장사업 정부지원 확정
	8월 12일	참살이 협동조합 공정무역 제품구입 소비촉진 업무협약
	9월~12월	사회적 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사업 2단계 확정
	9월 1일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11월 13일	화성시 공정무역 협의회 공정무역 기관협약체결
2021년	2월	수원햇빛발전 출자 및 펀드가입
	06월 11일	안양노인복지관 업무 협약
	10월 21일	청솔로터리클럽 업무 협약
	11월 16일	바른소식지 웹자보 발간
	12월1일~3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참가
2022년	3월 3일	명학점 오픈행사
	5월 25일	안양점 본점 이전
	11월 22일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지원 공로상 수상

제 37차(법인23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의명 :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7차 정기대의원 서면총회

2. 서면총회 개최 공고일 : 2021. 12. 28. (화요일)

3. 서면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 02. 25. (금요일) 17시

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3번길 7, 성진빌딩 2층

4. 서면총회 참석자

재적 대의원(조합원) : 95명(개인 95명)

- 개인 : 공혜조, 박진원, 이경, 조정희, 주선미, 한대건, 이상미, 방환이, 유명화, 이귀선, 이현희, 허옥숙, 신연홍, 장지택, 한경희, 박선희, 박경선, 김희숙, 이준미, 김금순, 이경애, 국경희, 권애경, 김기순, 김연희, 김영희, 김은영, 김태순, 김현숙, 문경식, 박기춘, 신동석, 이기순, 이순이, 이한영, 임재연, 구본숙, 김지원, 지선자, 최경희, 이정우, 박마리아, 송민주, 이정순, 이상영, 임성주, 하은숙, 박윤순, 김성덕, 남기숙, 김영희, 김월자, 김순희, 권용미, 송미령, 허혜란, 홍성례, 박순희, 오규원, 오송미, 유춘화, 윤영환, 이은경, 임지숙, 최미향, 이영주, 현미영, 김미혜, 김아신, 김은국, 김지은, 김진숙, 남양선, 송은형, 이종순, 조원주, 주미옥, 최가영, 박선진, 김금난, 김순심, 김정순, 박지영, 송순식, 심금자, 양미옥, 유승자, 윤형미, 이정자, 임상옥, 문인배, 윤완진, 최기화, 정미희, 주영덕

서면결의서 제출 대의원(조합원) : 87명(개인 87명)

- 개인 : 공혜조, 박진원, 이경, 조정희, 주선미, 한대건, 이상미, 방환이, 유명화, 이귀선, 이현희, 허옥숙, 신연홍, 장지택, 한경희, 박선희, 박경선, 김희숙, 이준미, 김금순, 이경애, 국경희, 권애경, 김영희, 김은영, 김태순, 김현숙, 문경식, 박기춘, 신동석, 이기순, 이순이, 이한영, 임재연, 구본숙, 지선자, 최경희, 이정우, 박마리아, 송민주, 이정순, 이상영, 하은숙, 박윤순, 김성덕, 남기숙, 김영희, 김순희, 권용미, 송미령, 허혜란, 홍성례, 박순희, 오송미, 유춘화, 윤영환, 이은경, 임지숙, 최미향, 이영주, 현미영, 김미혜, 김아신, 김은국, 김지은, 김진숙, 남양선, 송은형, 이종순, 조원주, 주미옥, 최가영, 박선진, 김금난, 김순심, 김정순, 박지영, 심금자, 양미옥, 유승자, 윤형미, 이정자, 임상옥, 문인배, 최기화, 정미희, 주영덕

5. 서면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2021년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1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처리(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2022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바른두레생협 정관변경(안) 승인의 건

6. 서면 총회 내용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이사장 이정우가 의장으로 의장석에 앉다.
- 재적 대의원(조합원) 95명 중 87명이 서면결의서를 회신했음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해 조합원 김선민을 서기로, 조합원 신동석, 구본숙, 박윤순, 정미희를 확인자로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수락하다.

서기		기명날인인	
수락	반대	수락	반대
87	0	87	0
범례: 87명			

제1호 의안. 2021년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이 윤영환/임상옥 감사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종합감사보고서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 조합원 87명의 동의로 승인하다.

동의	반대	범례: 87명
87	0	

제2호. 2021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처리(안) 승인의 건

- 의장이 2021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처리(안)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 조합원 87명의 동의로 승인하다.

동의	반대	범례: 87명
87	0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 조합원 87명의 동의로 승인하다.

동의	반대	범례: 87명
87	0	

제4호 의안. 2022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 의장이 2022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을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 조합원 87명의 동의로 승인하다.

동의	반대	범례: 87명
87	0	

제5호 의안. 바른두레생협 정관변경(안) 승인의 건

- 의장이 바른두레생협 정관변경(안) 승인의 건을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 조합원 87명의 동의로 승인하다.

동의	반대	범례: 87명
87	0	

기타의견으로 바른두레생협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앞으로 발전되는 바른두레를 희망하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해서 기쁘다는 의견을 주었다.

폐회 선언

- 의장이 서면결의서에 따른 모든 의결사항을 다루었음을 확인한 다음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22년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기총회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사록 확인자가 기명날인하다.

2022. 02. 25.

의장 및 이사장 이 정 위 (인)

의사록 확인자 신 동 석 (인)

의사록 확인자 구 본 숙 (인)

의사록 확인자 박 윤 순 (인)

의사록 확인자 정 미 희 (인)

제1호 의안	2022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감사보고서

일 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 소: 바른두레생협 사무국 회의실
참석자: 윤영환, 임상옥, 이정우, 한대건, 양연실

생협 정관 4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업/조직/운영 부분 감사의견]

1.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특수가 마무리되고 생협 업계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우리 생협 또한 목표/전년 대비 일정한 매출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식품 및 생활재 시장이 온라인 판매와 배송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올해는 12년 만에 명학점의 신규 개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안양본점 이전, 노후 냉장고 등 시설 및 장비 교체, 평촌점 리뉴얼 등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발생한 손실에는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생협이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마진율이 전년보다 낮아진 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 투자가 수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판매 및 매장 운영 전략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조합원 가입이 신규 매장 개점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안양본점 인근에 조합원공간이 조속히 마련되어 조직활동 및 조합원교육, 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활동과 조합원활동, 사회적, 공익적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좀더 높여 조직의 중장기적인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한 생협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4.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힘겹지만 안정적으로 조합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제들을 잘 풀어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바른두레생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 및 회계 부문에 대한 의견]

1. 바른두레생협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2. 바른두레생협의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5일

감사 임상옥 (인) 감사 윤영환 (인)

제2호 의안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이익잉여금 처리(안)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 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22년 사업부 평가

▣ 2022년도 핵심과제

도약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 2022년도 핵심정책

Ⅰ. 신규매장 오픈 및 매장이전

Ⅱ. 단체급식 ,연대사업 활성화

Ⅲ. 조직 역량 강화

1. 매출목표

1) 총 매출 목표 : 9,700,000,000원
2) 매장 매출 목표 : 8,750,000,000원-> 전년대비 8.8% 인상분 반영
3) 무점포 매출 목표 : 950,000,000-> 전년대비 -13.6% 인하분 반영
4) 마진율 목표 : 23.45% 확보

2. 핵심정책

1) 매장이전 및 신규매장

- 매장 오픈 및 이전으로 신규 조합원 모집 및 관리
- 매장 외부 환경 (생활재 세팅, 생협과 매장을 알리는 판촉물,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가입 유도
- 7매장 상권을 분석하여 주 고객층, 지역, 연령층을 파악한 후 매장 홍보 프로그램 실시.
- 바른두레생협 주관 조합원 확대의날 행사 월 1회 진행
- 매장 진열교육 및 CS교육 강화
- 문자 발송 및 POP 예약으로 진성조합원 확대 및 관리

2) 단체급식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 확보
- 안양/수원권 로컬푸드 축제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바른두레생협 홍보
- 기존 단체의 이용률 확대 및 신규 단체 확보를 통한 매출 루트 확대
-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주간할인 문자발송 및 템플릿 전달
- 기존 어린이집의 이탈 방지를 위한 꾸준한 홍보 및 관리 실시
- 설, 추석 명절을 통한 단체 및 기관에게 생활재 홍보 및 주문 활성화
- 지역공모사업 – 프로그램을 통해 소모임을 활성화 시키며 생협 가치관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촉진
- 경기도마을공동체,진흥원,사회적기업지원사업 등의 지자체단체 지원사업 확대
- 코로나 관련 사업 안정화 사업을 통해 매출 관리 및 안정화

3) 직원 역량 강화

- 바른두레인재상 수립(공통교육,직무교육 체계구축)
- 인사평가 제도 보완
- 매장 진열교육 및 CS 교육 강화

- 매장 실무자의 단계별 교육 실시
- 주간 홍보물의 표준화
- 통일된 POP 개발로 홍보물의 표준화 달성
- 점장 및 활동가 업무메뉴얼화
- 조합원 응대 및 CS 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
- 포스 업무 매뉴얼 등 교육 자료 개발
- 매장 시설 정기점검 시행 (정기적관리 – 비용절감)

1. 매출 목표 및 결과

1) 목표

- 2022년 매출 목표 : 年 97억
- 2022년 매출 결과 : 77억9천만원(전년대비 91.26%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 : -155,616,228

2) 결과

- 총매출 결과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	2022년 매출	전년도대비 성장율
매출	8,579,865,534	8,541,654,153	7,795,664,602	9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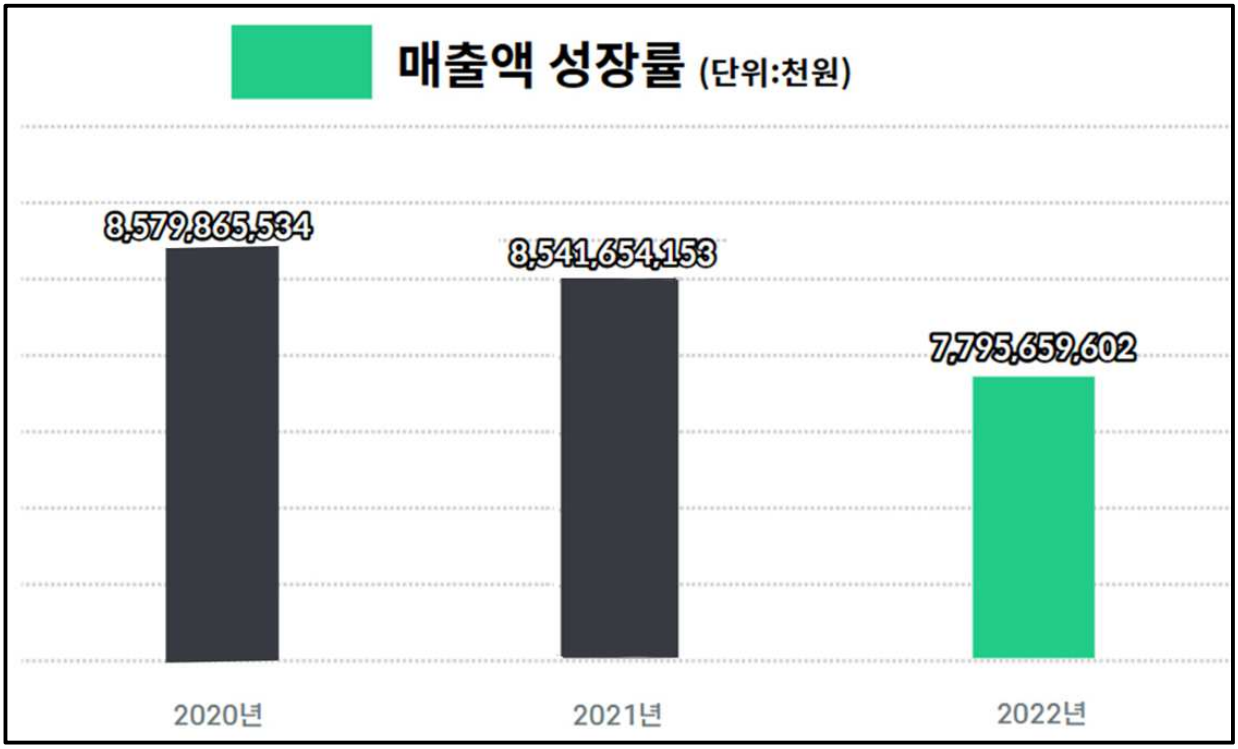

- 매장별 매출결과 <단위: 백만원>

매장	2021년 매출액	2022년 목표액	2022년 매출액	전년 대비증가(%)
안양	928,557,791	980,000,000	832,683,236	89.67
영통	1,373,572,717	1,450,000,000	1,264,028,414	92.02
평촌	1,226,354,979	1,280,000,000	1,113,522,438	90.80
천천	1,200,172,642	1,260,000,000	1,022,171,254	85.17
동탄	961,045,785	1,010,000,000	786,529,286	81.84
인덕원	1,084,106,101	1,140,000,000	882,640,076	81.42
매탄	866,028,020	910,000,000	679,567,801	78.47
명학		720,000,000	404,324,426	
무점포	901,816,118	950,000,000	810,192,671	89.84
합계	**8,541,654,153**	**9,700,000,000**	**7,795,664,602**	**91.27**

3) 2018~2022년 매출대비 순이익 통계

	매출액	순이익	성장률
2018년	8,073,830,386	12,205,830	1,576%
2019년	7,748,767,750	77,240,192	158%
2020년	8,579,865,534	114,282,163	147%
2021년	8,541,654,153	165,679,521	144%
2022년	**7,795,654,602**	**-155,616,228**	**적자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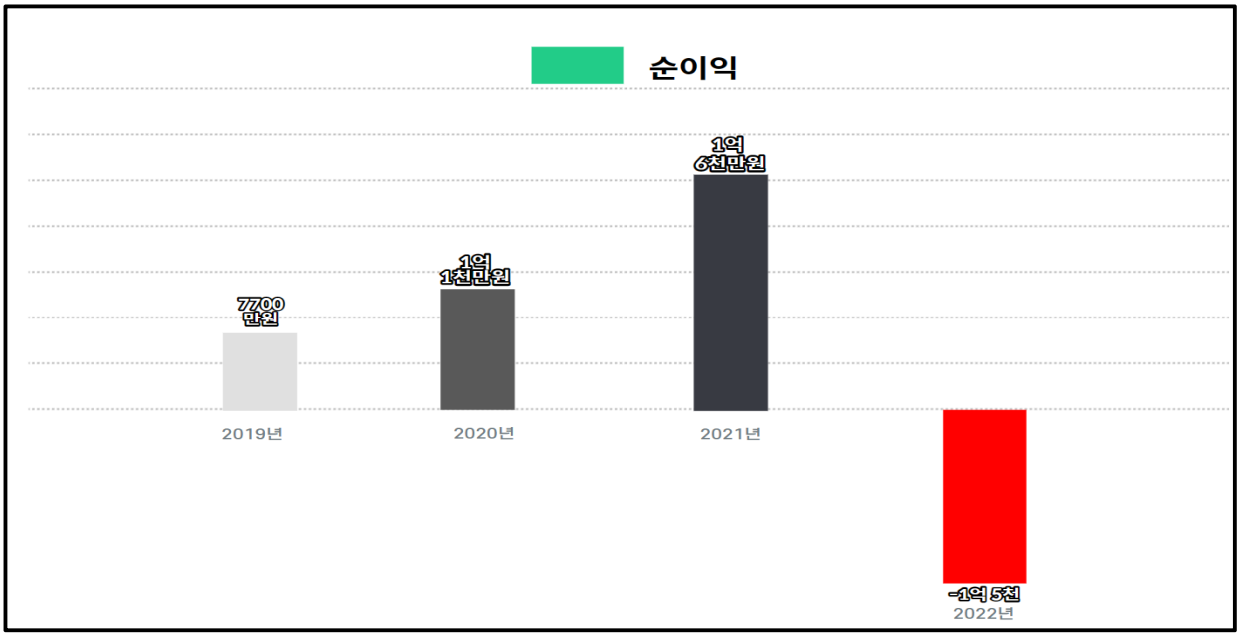

5) 2022년 매장 폐기율 및 마진

- 매장 폐기 현황(2018년~2022년)

년도	매출액	폐기 금액	폐기율
2018년	8,073,830,386	38,690,732	0.47%
2019년	7,748,767,750	50,674,016	0.65%
2020년	8,579,865,534	63,247,171	0.73%
2021년	8,541,654,153	54,109,243	0.63%
2022년	**7,795,664,602**	**47,778,711**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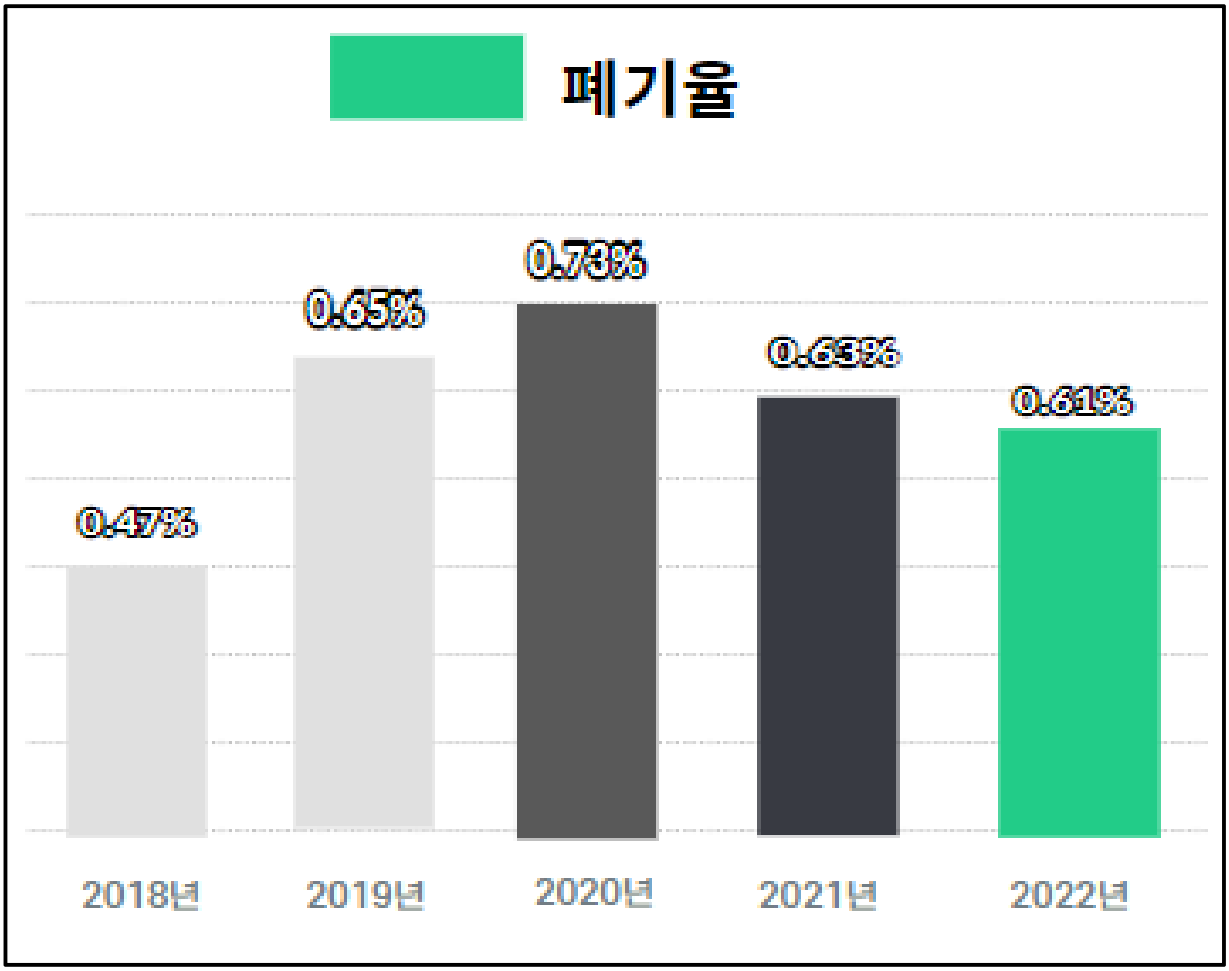

- 매장 마진율 현황(2019년~2022년)

년도	매출액	매출원가	마진율
2019년	7,748,767,750	6,056,575,058	21.67%
2020년	8,579,865,534	5,960,077,347	23.41%
2021년	8,541,654,153	6,529,930,242	23.55%
2022년	**7,795,664,602**	**6,015,255,280**	**2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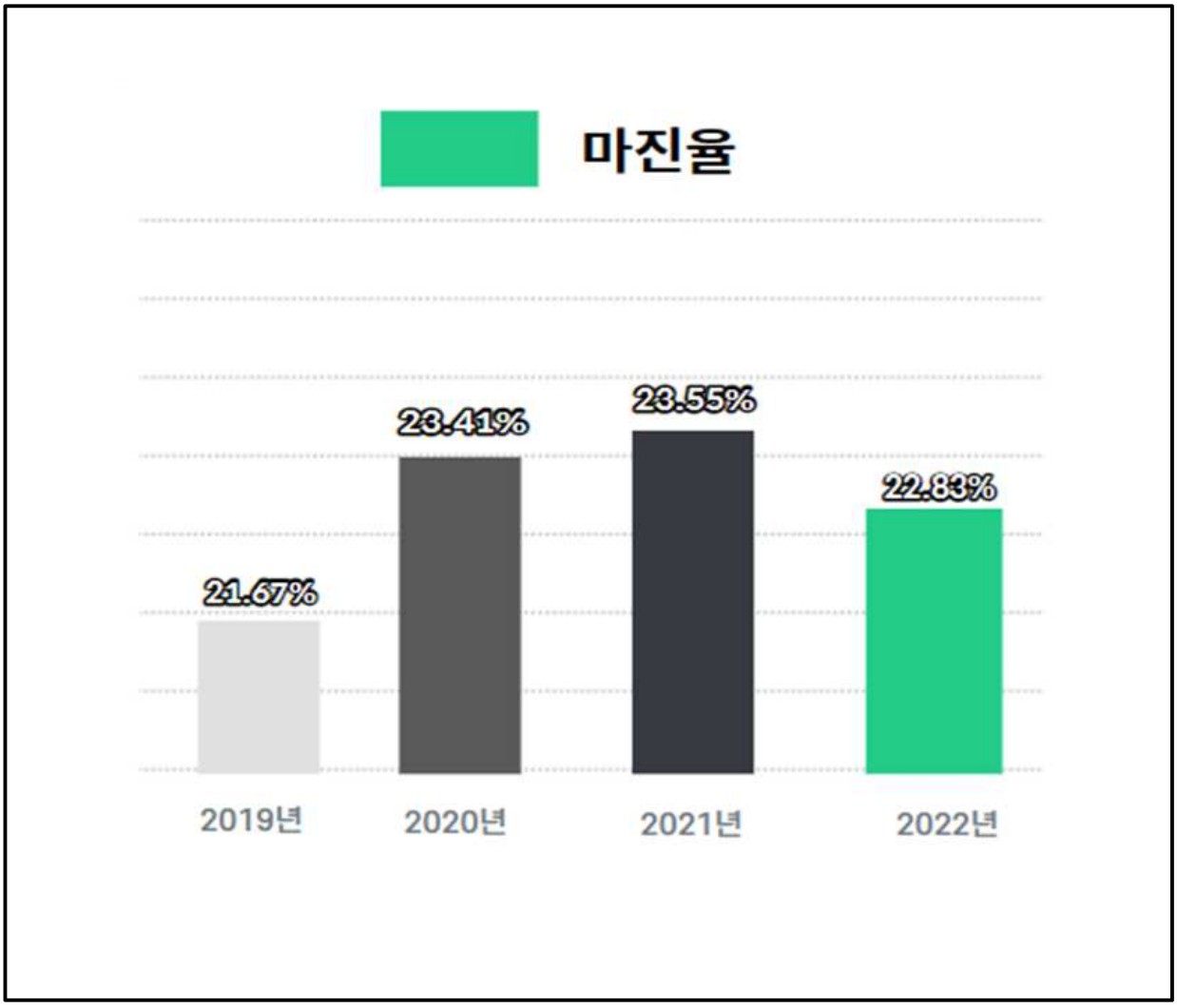

6) 2022년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매출현황

- 매출 현황(2018년~2022년)

년도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개수	매출 금액	매출비율
2018년	47개소	201,551,225	2.02%
2019년	53개소	252,752,686	2.49%
2020년	47개소	382,795,990	4.46%
2021년	77개소	464,563,946	5.43%
2022년	**80개소**	**511,189,735**	**6.55%**

7) 전년도대비 매장 방문객수 및 객단가

구분	2021년		2022년	
	객수	객단가	객수	객단가
안양점	21,668	40,991	23,537	35,210
영통점	34,802	36,888	37,144	33,127
평촌점	33,954	34,496	33,673	33,287
천천점	35,210	32,620	35,034	29,454
동탄점	24,337	37,370	24,166	32,575
인덕원점	30,739	33,807	30,808	29,034
매탄점	22,502	36,745	31,872	21,272
명학			15,945	24,614
합계	**203,212**	**36,131**	**232,179**	**29,281**

8) 사회적기업 매출

년도	사회적기업 입점 수	매출 금액
2020년	47개	339,577,893
2021년	53개	420,496,699
2022년	**57개**	**437,481,481**

2. 전년도 대비 조합원 가입, 탈퇴 및 이용조합원

- 2022년도 조합원 수 : 17,791명
- **이용조합원 80.56%달성! 작년대비 3.5% 상승!**

구분	가입		탈퇴		순증가		전체조합원		이용조합원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무점포	80	146	96	222	-16	-76	3,836	3834	1,588	1631
안양점	126	226	69	63	57	163	1,486	1612	1,050	1373
영통점	100	88	103	96	-3	-8	2,671	2,671	2,278	2293
평촌점	121	111	107	92	14	19	2,238	2,224	1,747	2224
천천점	142	112	86	89	56	23	1,807	1,841	1,807	1841
동탄점	125	72	74	86	51	-14	2,098	2,092	1,478	1634
인덕원	109	57	59	62	50	-5	1,424	1418	1,255	1412
매탄점	97	67	71	53	26	14	1,426	1440	1,196	1267
명학점		539		20		519		659		659
합계	**900**	**1,418**	**665**	**783**	**235**	**635**	**16,986**	**17,791**	**12,399**	**14,334**

3. 개별나눔(무점포)

- 조합원 수 : 1,631명 - 매출결과 : 940,855,190원

항목	21년 결과	22년 결과	전년대비(%)
매출	892,151,954	810,192,671	90.08%
이용조합원수	1,588	1,631	102.70%
1인당 이용금액	567,894	576,857	101.57%
총 주문 수	12,595	12,669	100.58%
1인당 연간 주문 횟수	7.9회	7.7회	97.46%

4. 매장별 배송 매출

(단위 : 천원)

	배송 건수			배송 매출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안양	2157	2176	100%	227,294	204,217	89%
영통	1953	2,231	114%	187,793	201,127	107%
평촌	2,042	2,151	105%	203,458	209,854	103%
천천	1,703	1,343	78%	180,938	127,058	70%
동탄	1,966	2,015	102%	282,056	235,801	83%
인덕원	1,439	1,431	99%	168,497	125,923	74%
매탄	1,991	1,506	75%	169,825	125,695	74%
명학		710			52,589	
합계	**13,251**	**13,563**	**102%**	**1,419,861**	**1,282,264**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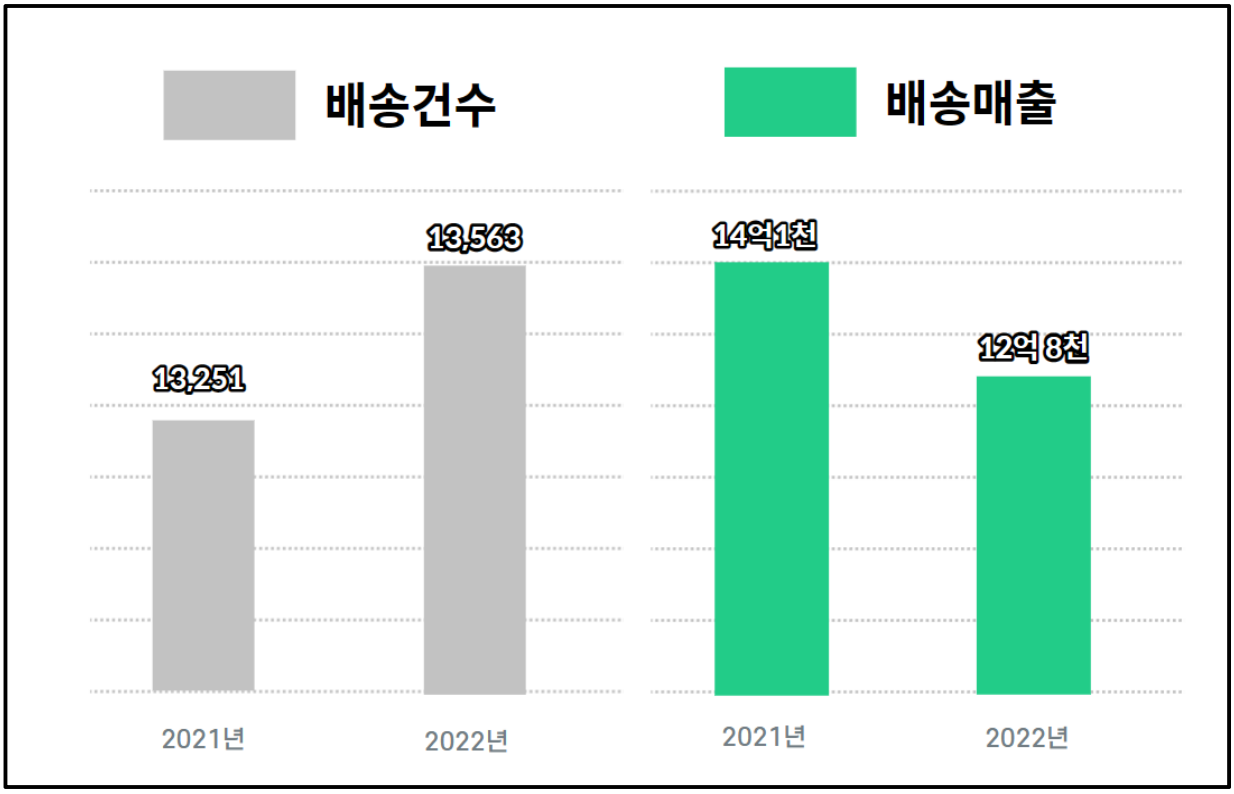

5. 2022년 월간 기획 및 생활재 기획

월별	2022년 월별 매장 행사 및 집중 생활재
1월	설명절행사 / 차례상 제수용품, 설선물세트 기획, 겨울방학 간편식, 건강식품
2월	대보름행사 / 고로쇠기획, 정월대보름나물, 메주
3월	신학기기획행사 / 환절기대비 건강식품, 봄나물, 햇과일
4월	영통점,인덕원점주년행사, 신규조합원확대행사 / 햇산양삼, 햇과일
5월	바른두레생협 창립행사, 책임조합원행사 / 햇산양삼, 토마토, 사과부사, 열무김치
6월	평촌점, 동탄점주년행사 / 청매실, 황매실, 블루베리, 하지감자, 햇마늘, 여름김장김치
7월	천천점주년행사 / 초복, 중복기획(전복/토종닭/장어), 복숭아, 블루베리, 메론, 수박, 천일염, 햇마늘
8월	말복기획 / 전복, 민물장어, 토종닭, 여름과일
9월	매탄점주년행사, 추석행사 / 햇수삼, 생오미자, 햇고춧가루, 왕새우
10월	감사행사 / 절임배추, 젓갈류, 천일염, 가을이불대전
11월	신규조합원확대행사 / 햇건구기자, 담근김치, 절임배추, 안심전기요
12월	연합감사행사, 바른연말행사, 책임조합원행사 / 크리스마스 케익, 와인

▣ 2022년 BEST 생활재

조합원님이 가장 많이 이용하신 생활재는?		가장 많이 이용하신 독자 생활재는?	
순위	생활재명	순위	생활재명
1위	우리콩부침용두부(대/국산)	1위	사)사골곰탕(맛들)
2위	무농약 콩나물(300g)	2위	단)강원도강냉이(150g)
3위	우리콩찌개용두부(국산)	3위	사)진짜로갈비
4위	깻잎(20장/무농약)	4위	단)우리밀도리야끼
5위	유정란(15알/동물복지/산안)	5위	단)유기농짭짤이토마토
6위	오이(2개/무농약)	6위	사)한우장터국밥
7위	풀우유(900ml/유기농)	7위	사)르씨엘중형14p
8위	당근(500g/무농약)	8위	단)한입쌀강정
9위	왕찹쌀떡(100g)	9위	단)상황버섯차
10위	맑은농장 베리베리주스	10위	단)쑥갠떡

조합원님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생활재는 올해도 역시 일일 신선식품과 신선채소류!

▣ 총평가

2022년은 전년(2021년)에 비해 매출 8%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악화와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건강' 및 '친황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면서 2020년과 2021년에 기록되었던 매출 상승면이 2022년에 들어 감소세를 보였으며, 코로나 규제완화로 인해 기존 조합원및 일반인들의 소비패턴 또한 변화함에 따라 매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핵심정책 중 하나였던 매장 이전(안양점 이전) 및 신규매장 오픈(명학점오픈) 또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매장인 명학점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하며, 주변 대단지의 잠재적 조합원들을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장오픈 당일 가입한 조합원 수를 제외하면 매장이 이용이 가능한 가용조

합원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동탄점의 경우 매장 주변 친환경매장의 입점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매장 홍보에 주력하고 두레생협만의 '가치소비' 알리기와 조합원의 특성에 맞는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조합원 확대와 매출액 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조직부문

1. 위원회 활동

■ 생활재 위원회

1) 신규 생활재 검토 및 시식

◦ 일 시 : 매월 첫째주 목, 금요일 10:00 ~ 13:00

◦ 내 용 : 생활재가 공급되기 전, 두레생협 조합원을 대표하여 안전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재들을 검토하고 개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매월 안양, 수원권 각 1회씩(총 2회) 진행.

차수	일시	참석	회의결과
1차	1/13(목)	13조합 – 대면 8조합 화상회의 5조합 –	○ 총 6개 유형 9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9품목) : 마카롱1번, 마카롱2번, 돈육전, 깐풍장어, 아스파라거스진액, 여주환. 그레인시카크림, 산다화 안티링클 멀티밤, 브람스 눈마사지기 ○ 기타사항 - 감자옹심이밀키트를 당일보고로 제안하였으나 과도한 가격으로 보류로 결정 - 사양이 변경된 유기농식혜, 유기농수정과에 대해 보고함. 공통생활재로 취급이 결정됨(변경사양_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 유기농 생강의 수급이 어려움에 따른 대추생강차의 원재료 사양 변경보고건에 대한 보고. 변경된 사양으로 취급이 결정됨. - 소비부족, 원재료 수급 불안정, 설비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사양 변경 생활재 두레유기농초코볼, 사계절과일푸레이크에 대한 보고. 변경된 사양으로 취급을 결정함. - 제조 환경 개선에 따른 함량 및 중량 변경 생활재 토마토스파게티소스에 대해 보고함. 변경된 사양으로 취급이 결정됨. - 2021년 농공상기업 판로지원 기획전 결과 보고
2차	2/17(목)	11조합 – 대면 6조합 화상회의 5조합 –	○ 총 5개 유형 8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6품목) : 수제애플파이, 샌드위치식빵, 맘모스빵, 담백한 닭가슴살페퍼, 우리가족유기농멀티비타민, 황실세안타올 - 보류(2품목) : 꽃소떡, 수제화이트치킨부리또 ○ 기타사항 - 지체장애인 재활 시설인 애덕의집의 경영 악화에 따른 희망나눔 캠페인 진행으로 쌀케이크 2종의 기획공급 보고 - 마스코바도의 공정의 일부(건조, 채치기)를 기계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 안내함

3차	3/10(목)	14조합 – 대면 10조합 화상회의 4조합 –	○ 총 3개 유형 8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6품목) : 촉촉초코쉘케이크, 촉촉딸기쉘케이크, 오징어땅콩볼, 참깨고소봉, 풀빛고운 더마플러스 아토라인(크림, 로션) - 보류(2품목) : 한우불고기, 돼지고추장불고기 ○ 기타사항 - 돈가스소스와 불고기양념에 대하여 공통기준 규격 용기로의 변경 및 일부 성분 유기사양으로 변경됨을 보고함. 변경된 사양으로 취급이 결정됨. - 핫도그 3종에 대하여 새롬식품의 사업 축소에 따라 공급구분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변경하게 됨을 보고함. 변경된 사양으로 취급이 결정됨. - 생협함께 사업 진행 내용 중 22년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비빔라면을 품목으로 선정하여 진행됨을 안내함. 제안사양으로 변경이 결정됨.
4차	4/14(목)	13조합 – 대면 10조합 화상회의 3조합 –	○ 총 7개 유형 24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24품목) : 통단팥빵, 버터크림빵, 아침빵, 카스테라, 단호박카스테라, 소보로빵, 잼롤케이크, 두부과자, 면두부, 채식김치, 갑오징어불고기밀키트, 강화젓국갈비밀키트, 우리밀비빔막국수, 우리밀물막국수, 맑은농장 벌나무즙, 유기농 루이보스밀크티베이스, 보스웰리아(분말), 바른 다목적세정제, 맑은향기 스프레이4종, 산다화 안티링클 세럼, 풀빛고운 더마플러스 아토라인(워시) ○ 기타사항 - 급식용으로 공급중인 대용량의 토마토케찹에 토마토 품종 변경을 보고함. 변경된 사양으로 취급이 결정됨. - 22년 2월 선정회의 진행 결과 제안 생활재의 닭잡내와 느끼함을 개선하여 보류로 결정된 수제화이트치키부리또를 요리수 소량 첨가 및 생크림 양을 감소 시켜 개선된 생활재로 제안함. 개선을 확인하고 제안사양으로 공통생활재 취급을 결정함. - 22년 3월 선정회의 진행 결과 양념에 들어간 첨가물 개선하여 보류로 결정된 양념불고기 2종을 첨가물 배제 및 단맛 조정한 개선된 생활재로 제안함. 개선을 확인하고 제안사양으로 공통생활재 취급을 결정함. - 22년 2월 선정회의 진행 결과 떡에 질척거림으로 보류 됨에 따라 조리법 개선한 생활재 시식으로 진행함. 개선 생활재에 경우 에어프라이어로 조리 시 식감 부분 만족스럽다는 의견으로 공통생활재로 취급 결정됨
5차	5/12(목)	15조합 – 대면 12조합 화상회의 3조합 –	○ 총 5개 유형 15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14품목) : 계란과자, 호두과자, 건조나물밥 쉽게만들기 7종, 시레기된장국뚝딱, 순진한통째로장어, 플라워디퓨져, 마이크로바이옴 플로라 2종 - 선택생활재(1품목) : 무선진공포장기 ○ 기타사항 - 새롬식품에서 공급 중이던 초코파이가 4월 초부터 급작스럽게 중단된 상황으로 6월말~7월초 공급 재개 예정이나 불확실함에 따라 대체공급을 위해 신규 제안함을 안내함. 나오인터내셔널의 초코파이는 한시적 신규 취급하는 것으로 결정함. - 무농약 원물 재고 소진에 따른 8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유기농옥수수병조림(급식용)의 사양변경을 보고함. 유기농 옥수수병조림은 사양변경 원안 승인됨.

			- 담금청매실, 담금황매실의 주원료인 매실의 유기농 인증 취소에 따른 두레인증 매실로 변경 공급예정임을 보고함. 담금매실 2종의 사양변경은 원안 승인됨 - 2022년 상생마켓, 협동조합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기획(안) 보고
6차	6/9(목)	13조합 – 대면 11조합 화상회의 2조합 –	◦ 총 4개 유형 6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6품목) : 호두통밀식빵, 어린이식빵, 떡고기말이, 수제피자부리또, 단백질쉐이크 오곡맛, 기금마련 주방세제 ◦ 기타사항 - 품목제조보고 과정에서 성분(소세지의) 반올림 오차로 인해 배합비가 변경된 꽃소떡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 바삭한 연근칩의 연근과 관련하여 계약재배로 수급하는 연근에 인증 종료로 기존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사양개선 공급 예정임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 지난 5차 회의시 확인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점검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함. 그 과정에서 더욱 안전한 색소 사용을 위해서 성분 변경됨을 안내함.(기존 타르색소)_플라워디퓨저2종 - 생활재선정위원회 생산지 견학 : 6월 17일(금) 온세까세로, 산골농장
7차	7/14(목)	14조합 – 대면 12조합 화상회의 2조합 –	○ 총 7개 유형 8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8품목) : 참다래샐러드소스, 발사믹샐러드소스, 토마토스파게티 밀키트, 딸기소르베, 삼양주생막걸리, 유기농간편디카페인커피, 여성(속옷)전용세탁세제, 퓨어리즘제로 ○ 기타사항 - 신규 선물세트 말랑꿀버터 오란다 선물세트 보고하였으며, 취급이 결정됨 - 네니아 바닐라 아이스크림(컵)에 천연 바닐라 향이 들어가 있어, 바닐라 씨를 넣는 것으로 일부 사양 개선을 보고하였으며, 취급을 결정함. - 프로폴리 치약에 원부재료인 국내산 프로롤리스 추출액의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제조사 변경을 보고하였으며, 변경이 결정됨. - 순진한 통째로 장어 5차 선정회의 제안서 함량 계산 오류로 (1박스 당 5.7kg - > 1.8kg로 정정 보고 진행) 정정 보고함. - 협동조합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보고
8차	8/11(목)	10조합 – 대면 8조합 화상회의 2조합 –	○ 총 5개 유형 9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8품목) : 코코넛플라워슈가, 숲에서자란공정무역허브티5종, 풀빛고운대나무수진정토너패드, 산다화비타민C화이트닝에센스 - 미취급생활재(1품목) : 발랑곤바나나칩 ○ 기타사항 - 우리아이착한과자 3종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원재료 수급 불안정에 따라 태국산 현미유로 변경 보고 하였으며, 취급이 결정됨. - 유기농 블루베리 콩포트 기존의 이탈리아산 레몬주스를 국내산 레몬주스 사양으로 개선을 보고 하였으며, 취급이 결정됨. - 프로폴리 치약에 원부재료인 국내산 프로롤리스 추출액의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제조사 변경을 보고하였으며, 변경이 결정됨.

			- 2022년 6차 선정회의 제안 생활재 떡고기말이 사양 원재료 중 무항생제 사양 돼지갈비살 수급 불안정 및 가격 급등으로 일반 국내산 사양 변경을 보고하였으며, 8/17수 미취급 단협(바른두레) 1곳 으로 원안 승인됨. - 유기농 프락토 올리고당 설비 변경으로 MOQ에 적정한 기존 1년 유통기한에서 2년으로 연장을 보고하였으며, 변경이 결정됨. - 손소독수, 옷장탈취제 특정 성분에 수급 불가능 및 생산시 제형 안정성 향상을 위해 성분 추가 및 삭제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취급이 결정됨.
9차	10/13(목)	12조합 – 대면 10조합 화상회의 2조합 –	○ 총 3개 유형 4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4품목) : 찹쌀서리태부각, 다시마튀각, 맑은농장 맥주효모환, 맑은농장 보스웰리아환 ○ 기타사항 - 주곡류 적체에 따라 찹쌀 소진 정책에 일환으로 왕찹쌀떡 기획공급에 대해 보고 진행함, 당회 취급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조합원 공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됨. - 당회 공급중인 제주감귤주스의 공급 불안정으로 임산부 사업 전용 생활재로 운영중인 유기요기 유기농감귤주스를 상시공급 전환함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스토어36.5와 연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특화상품 판로개척 사업 진행 취지와 액상세탁세제 신규 기획공급 보고함. 원안 승인됨. - 생산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강회 공급중인 찐빵 4종에 보관 온도를 냉장에서 냉동으로 변경하여 공급 예정임을 보고함, 냉동 공급에 대하여 15년도 이전 진행된 바가 있기에 품위 불안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원안 승인됨. - 마카롱에 구성성분 중 유기농설탕의 원산지가 수급 불안정으로 기존 파라과이산과 콜롬비아산을 병행 사용함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 당회 공급중인 쌀조청의 구성 성분 중 엿기름임 유기농사양으로 변경되어 보고함. 원안 승인됨. - 당회 공급중인 생기를담아 묵은지의 구성성분중 배추, 무, 고춧가루가 무농약&일반에서 유기농 사양으로 변경됨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 당회 공급중인 생각차의 주원료인 생각이 기존 무농약 사양에서 유기농으로 개선됨을 안내함. 원안 승인됨. - 당회 공급중인 우리가족 루테인오메가3의 주요 원재료중 하나인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원산지가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변경된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 당회 공급중인 액상세제류 4종이 환경표지 인증 획득을 위해 사양 변경됨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10차	11/10(목)	12조합 – 대면 11조합 화상회의 1조합 –	○ 총 3개 유형 6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6품목) : 밥알찰떡(쑥), 밥알찰떡(흑임자), 자연애닮길 밥이요리다 누룽지탕(오색현미), 자연애닮길 밥이요리다 누룽지탕(완도톳), 자연애닮길 밥이요리다 누룽지탕(진도울금), 실론 시나몬가루 ○ 기타사항 - 당회 공급중인 코코아와 같은 사양(코코아 원산지만 변경)에 대용량 생활재 신규 공급 보고함. 원안 승인됨.

			- 사회적기업 활성화 일환으로 바오푸드 머슬만두 2종을 온라인 한정 신규 공급 보고함. 원안 승인됨. - 이중 포장 개선 및 품위 향상을 위해 유황소금비누 사양 개선 변경 보고함. 원안 승인됨.
11차	12/15(목)	10조합 – 대면 10조합 화상회의 0조합 –	○ 총 5개 유형 12품목 제안 ○ 선정결과 - 공통생활재(12품목) : 가벼운 호박차(가칭), 거문도해풍쑥, 제주에서 온 메리골드차(꽃송이), 제주에서 온 메리골드차(티백), 유기농 양배추환, 자연애닮길 밥이요리다 누룽지탕(장흥표고), 자연애닮길 밥이요리다 누룽지탕(귀리귀리), 동결건조 연어스틱, 동결건조 북어스틱, 동결건조 열빙어, 동결건조 고구마트릿, 우리밀찹쌀호떡 ○ 기타사항 - 빵류 원재료 중 버터의 국내 수급 불안정으로 수입산 사용함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 당회 공급중이던 호두파이에 제조처가 변경됨을 보고함. 원안 승인됨. - 돼지감자차 100 신규 공급 보고함. 원안 승인됨. - 크리스마스 시즌 신규 기획 생활재 당근치즈케이크 신규 공급 보고함. 원안 승인됨. - 22년도 임산부 사업 종료로 전용 생활재로 공급중이던 포켓누룽지 유기농현미의 상시공급 전화에 대하여 신규 공급 보고함. 원안 승인됨.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사업 마감에 따른 기회 겨로가 보고함 - 23년도 설 명절로 인해 1월 회의는 미진행 하는 것으로 일정 논의됨

◦ 평 가 : 두레생협에서 취급하는 생활재들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조합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 복지위원회

1) 간편식 반찬봉사활동

◦ 일 시 : 매주 목요일 09:00 ~ 12:00

◦ 내 용 : - 안양시 만안구 독거노인 9가구에 간편식반찬전달

- 노인 분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등)의 균형을 맞춘 메뉴로 구성

◦ 복지기금 기부현황 : - 43명의 조합원과 직원이 기본 1구좌 이상의 복지기금을 기부하고 있음.

- 현물 기부 및 반찬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음.

2) 안양노인종합복지관

◦ 일 시 : 매월 1회

◦ 내 용 : 안양시 취약계층(노인) 지원사업

- 수급처 :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매월 1회 : 1만원 상당 / 40인어르신

◦ 평 가 : 복지기금 기부금액으로 안양시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 바른두레생협의 세제 혜택도 발생되었습니다.

■ 콩세알 편집위원회

◦ 일　시 : 매월 1회(매월 3일~4일　11시 이전 발행)

◦ 내　용 : -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해 발행했던 월간 소식지를 2021년 11월부　터웹자보(모바일)를 통해 바른두레생협 활동과 소식을 조합원에게 전달함.

- 직원 4명으로 편집위원회구성

◦ 세부항목 : 신규조합원안내, 중요행사(달력), 조합원 소개, 생산지 소개, 생활재 소개, 생활재 레시피, 생활재위원회 활동, 지속가능 캠페인, 바른두레탐방, 바른도서탐방 등

◦ 평　가 : 시작 단계로 웹자보 구성, 원고정리, 연동 프로그램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편집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차 안정적인 편집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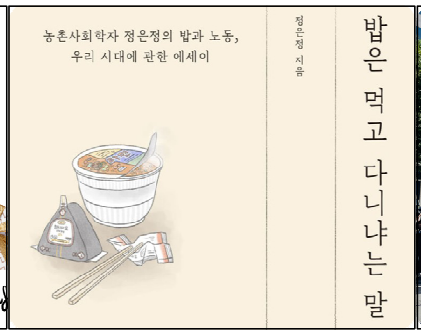

■ 환경캠페인

1) 자원순환캠페인
- 일　시 : 2월 17일(목)
- 방　법 : 온라인(zoom)
- 내　용 : 종이팩 재활용의 중요성과 실천 교육

2) 기후정의 대행진
- 일　시 : 9월 24일
- 내　용 : 기후위기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후위기대행진을 하며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알림.
- 장　소 : 서울광화문일대

3) 안양시민축제
- 일　시 : 9월24~25일
- 내　용 : 환경부스를 운영하고 스탬프투어를 통해 버려지는 일회용커피컵을 이용해 화분으로 업사이클링하고 일반시민들에게 생협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줌.
- 장　소 : 평촌 중앙공원

4) 생명나눔한마당 캠페인
- 일　시 : 10월27일,10월28일
- 내　용 : 못생긴 야채도 맛있는 식재료가 될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레시피공유를 통해 조합원들이 누구나 즐겁게 까나페를 먹고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유함.
- 장　소 : 명학점, 안양점

- 평　가 : 기후위기나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많은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먹거리등 생협의 가치를 알리는데 많은 부분 기여했습니다.

■ 공정무역 캠페인

1) 안양 대시민 캠페인
   - 일 시 : 5월 14일
   - 내 용 : 일반시민대상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생협을 알리는 활동
   - 장 소 :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

2) 공정함을 열다
   - 일 시 : 6월30일,8월24일,8월27일,8월31일,9월3일,9월14일,10월22일 등 15회기 완료
   - 내 용 : 공정무역에 대해 물품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가벼운 티파티를 통해 4-5인의 모임으로 구성된 조합원 및 일반시민들에게 알림.
   - 장 소 : 안양지역내 교육을 원하는 장소

3) 청소년 공정무역학교
   - 일 시 : 7월13일,7월22일,7월25일,10월25일
   - 내 용 :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고 가치적인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함.
   - 장 소 : 안양지역내 교육을 원하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4) 공정무역 기초강사 양성과정
   - 일 시 : 8월9일
   - 내 용 : 공정무역에 관심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의 기초를 전달하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줌
   - 장 소 : 줌 회의

5) 경기도 광명포트나잇

- 일 시 : 10월28일
- 내 용 : 광명에서 진행했던 피스앤피스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광명포트나잇 행사를 통해 지역 참여를 통해 생협을 알림.
- 장 소 : 광명극장,평생학습원 일원

6) 지속가능발전한마당

- 일 시 : 10월 22일
- 내 용 : 지속가능발전과 공정무역의 공통점을 찾고 느끼며 공정무역이 곧 지속가능한 발전임을 알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을 생각하게함.
- 장 소 : 평촌중앙공원

7) 안양공정무역협의회 거리캠페인 및 공정무역 심화과정

- 일 시 : 11월 11일
- 내 용 : 안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리고 공정무역 물품 전달.
- 장 소 : 범계 로데오거리

8) 안양공정무역협의회 공정무역 심화과정-아리엘기데스 비대면 만남

- 일 시 : 11월 28일
- 내 용 :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아리엘기데스 비대면 만남을 통해 공정무역 현재상황과 기후위기등을 만남을 통해 현지상황을 알아감.
- 장 소 : 안양 YMCA등대생협 당나귀

- 평 가 : 환경과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인식확산과 함께 공정무역물품을 직접 체험하고 설명을 통해 많은사람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생협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기여했고 좀더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자발적참여를 유도할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공정무역에 온 에너지를 쏟은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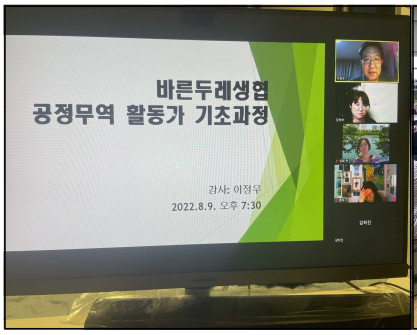

■ 생산자 온라인 강의 및 생산지 방문

1) 청오건강
- 일 시 : 5월24일
- 내 용 : 청오건강 생산지를 방문하여 생산지와 교류를하고 소통을 이어감.
- 방 법 : 직원들과 청오건강 견학후 간담회를 통해 생산지를 알아감.

2) 씨알축산
- 일 시 : 8월26일
- 내 용 : 씨알축산의 축산방법과 질의응답
- 방 법 : 바른두레, 안양y생협, 울림생협,안성두레생협,팔당두레생협,마포두레생협 등 6단협 온라인(zoom) 협동진행
- 방 법 : 줌으로 6개단협이 협동으로 진행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전체적인 이해를 풀어감.

3) 산안유정란
- 일 시 : 7월19일
- 내 용 : 바른두레생협의 설립당시 처음으로 거래를 한 생산지여서 그때의 의미를 되새기며 산안유정란 생산지와의 교류를 도모함.
- 방법 1 : 직원들과 이사들 대상으로 산안유정란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현황을 파악
- 방법 2 : 줌으로 6개단협이 협동으로 진행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전체적인 이해를 풀어감.

4) 초록식품
- 일 시 : 9월23일
- 내 용 : 초록식품 생산지를 방문해 생산배경과 생산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신입직원과 함께 방문.
- 방 법 : 6개월 미만의 신입직원들과 함께 생산지를 방문하여 견학을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생산지와 생활재에 대한 이해를 함.

5) 예산옹기
- 일 시 : 10월31일

◦내　용 : 조합원과 생산자의 만남을 통해 좀더 조합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생협의 이해를 도움.
◦방　법 : 조합원과 직접 생산자의 간담회를 통해 옹기의 제조과정과 옹기에 대한 이해를 도움.

6) 원주생명농업
◦일　시 : 11월15일
◦내　용 : 조합원과 생산자의 만남을 통해 좀더 조합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생협의 이해를 도움.
◦방　법 : 조합원과 직접 생산자의 간담회와 농업방식을 이해하고 직접 견학하면서 생협의 생활재에 대한 이해를 도움.

◦평　가 : 코로나 시대로 인한 많은부분 생산지 방문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차 완화됨으로 더욱더 생산자와 조합원의 활동을 늘려감이 필요해 보이고 조합원님들의 방문후 좀더 생활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치를 알아갈수 있는 좋은시간이 되었고 좋은 평가가 이어져 많은부분 교류가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규조합원 행사

1) 신규조합원 만남의 날
◦ 일　시 : 매달 3째주 금요일 오전 10:30
◦ 내　용 : 온라인(zoom) 신규조합원 만남
◦ 장　소 : 본부 2층

◦ 평　가 : 신규조합원 만남의 날을 통해 좀더 조합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참여의 좀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많은 신규조합원님들이 생협은 이런곳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이 필요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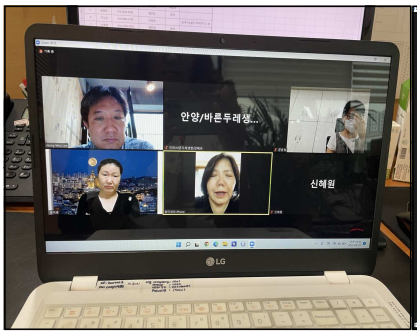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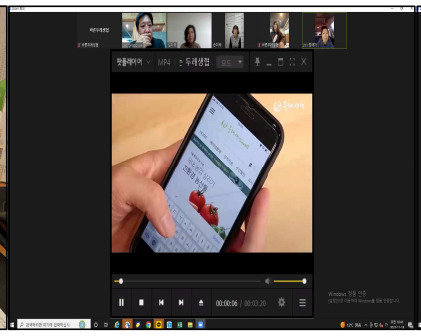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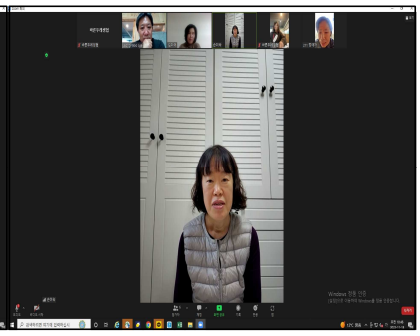

■ 기타활동

1) 명학점 오픈행사
- 일 시 : 3월3일
- 내 용 : 신규매장 오픈 기념행사
- 장 소 : 명학점

2) 안양점 이전 행사
- 일 시 : 5월18일
- 내 용 : 안양점 확장 이전행사
- 장 소 : 안양점

3) 연합 창립 행사
- 일 시 : 6월 27일~28일
- 내 용 : 연합 창립 행사로 인한 할인행사
- 장 소 : 전매장

4) 생명나눔한마당 홍성유기농 일손돕기
- 기 간 : 10월15일
- 내 용 : 생산자의 어려움을 알고 일손을 도와 지역사회에 기여함.
- 방 법 : 조합원과 함께 생산지를 방문하여 일손을 돕고 친목을 도모하고 생산지의 어려움을 알고 기여함.

5) 산타나눔행사
- 기 간 : 12월22일~23일
- 내 용 : 조합원님들께 어려운 아동들에게 줄 생활재를 기부받고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어려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
- 방 법 : 조합원과 함께 산타나눔행사에 대한 설명후 기부를 받고 22~23일 산타주머니를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달.

▣ 총 평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미뤄졌던 행사가 9월부터 진행되면서 조합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아울러 생산지방문이나 공정무역활동을 통해 바른두레생협의 가치와 생협의 생활재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모임이나 활동 등이 단절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 등에 조합원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양한 컨텐츠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조합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모임이나 교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매장별로 특성화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홈페이지와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매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또한 어떻게 하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환경문제와 관련한 업싸이클링이나 기후위기에 관련된 활동 또한 확대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2022년 후반기에 실시했던 조합원님과 함께 하는 생산지방문을 정기화하고 조합원과 생산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지 방문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생산지와의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생산지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2년 기획관리부문

1. 기관 관리

1) 정기 대의원총회 (서면총회)

차수	일시	장소	주요의결사항
37차	2022.02.25.일 금요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3번길 7, 성진빌딩 2층	.2021년 감사 보고 및 승인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 이사회

차수	일시	장소	주요심의안건
1차	1/20	안양점 2층조합원공간	-21년 사업 평가 및 결산의건 -경기남부두레 출자참여요청의 건
2차	휴회		
3차	3/22	안양점 2층조합원공간	-안양점(본점)이전 계획의 건 -명학점 법인 지점등기 등재의건 -연합물류센터건립관련 단협 출자금 분담의건
4차	4/19	안양점 2층조합원공간	-안양점(본점) 이전에 따른 투자 비용 충당 및 등기변경의 건 -매탄점 영업시간 변경(일요일휴점)의 건
5차	5/17	안양점 2층조합원공간	-본부 총괄 관리자급 직원채용의 건 -동탄점 노후 냉동고 교체의 건
6차	6/21	평촌점 2층 조합원 공간	-매장 노후 냉동고 교체의건 -평촌점 리뉴얼 공사의 건
7차	7/19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법인	-책임조합원 무료배송의 건

8차	휴회		
9차	9/20	평촌점 2층 조합원 공간	-총괄상무 선임의 건 -이사장 및 이사활동비 인상의 건
10차	10/24	평촌점 2층 조합원 공간	-조합원 가입,탈퇴의 건
11차	10/24	평촌점 2층 조합원 공간	-임직원 연차 수당 및 유급휴가 부여의 건
12차	11/25	평촌점 2층 조합원 공간	-2023 총회 일정 확정의 건 -직원급여 인상의건 -2022결산(안) 및 2023계획의 건

2. 조직관리

1) 조합원 확대

■ 전년대비 신규가입 조합원 증가 현황

구분	조합원 수(명)	순증가	증가율(%)
2016년	16,964	142	100.8
2017년	16,532	-432	95.7
2018년	16,536	4	100
2019년	16,697	161	100.9
2020년	16,871	174	100.1
2021년	17,171	300	101.7
2022년	17,791	635	103.6

■ 업장별 조합원 가입현황 (단위: 명)

구분	무점포	안양	영통	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명학	계
16년	126	137	174	226	204	232	95	173		1,367
17년	121	105	140	230	205	165	143	163		1,272
18년	77	86	113	115	227	144	103	152		1,017
19년	74	70	84	130	126	169	118	83		854
20년	89	70	81	152	120	132	104	77		825
21년	80	126	100	121	142	125	109	97		900
22년	146	226	88	111	112	72	57	67	539	1,418

2) 출자금

■전년대비 출자금 증가현황

구분	출자금액	증가율	순증가
2016년	1,358,179,122	106.2	79,633,714
2017년	1,347,266,081	99	-110,913,041
2018년	1,459,788,697	108.3	112,522,616
2019년	1,563,668,679	107.1	103,879,982
2020년	1,619,868,151	103.6	56,199,472
2021년	1,680,500,242	107.9	60,632,091
2022년	1,728,446,522	102.8	47,946,280

3. 대외 연대 활동

■ 두레생협 연합회

-총회 -이사회 -실무책임자회의
-생활재 선정위원회 -두레연합 지역별회의 -총무·회계팀 회의
-그루터기사업팀회의 -개별나눔 담당자 회의 -조직·홍보담당자 회의

■ 안양지역협동조합협의회 ■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 ■안양지역급식네트워크
■화성공정무역협의회 ■수원공정무역협의회 ■수원지역급식네트워크

4.기획관리활동

■교육부문

NO	일정	내용	주관	참가자
1	2022.12.11.(온라인)	NCS기업활용컨설팅	한국산업인력공단	양기남
2	2022.07.20.(온라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에듀라인	양기남
3	2022.09.02.(온라인)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바른두레	전직원
4	2022.12.21.-2022.12.31.(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전직원
5	2022.12.21.-2022.12.31.(온라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전직원
6	2022.12.21.-2022.12.31.(온라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전직원
7	2022.12.21.-2022.12.31.(온라인)	퇴직연금 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전직원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원들 교육은 비대면 및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

5.인력현황 (2022.12.31.현재)

구분	본부	무점포	안양	영통	평촌	천천	동탄	인덕원	매탄	명학	계
8시간	6		1	1	1	1	1	1	1	1	14
단시간			4	4	4	4	4	5	3	3	31
21년	9	0	5	6	5	6	5	5	4		45
22년	6	0	5	5	5	5	5	6	4	4	45

6. 평가

•인사
-법정의무교육 및 4차산업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시대변화에 적응능력을 높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바른두레 인사관리에 즉시 반영

-성과급 및 근속수당 지급등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배송지기 정직원 퇴사로 인해 배송지기 별도 채용

•회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환 영업외 수익 창출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기업협약매장지원사업 1차 28,000,000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기업협약매장지원산업 2차 28,000,000원
-수요맞춤형 1차,2차스토어 36.5 지원금 4,200,000(부가세포함)원
-명학점 오픈 연합회 지원금(판매장려금) 4,165,469원
-안양점 이전행사 연합회 지원금(판매장려금) 3,524,420원
-전기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비용 15,300,135원 환급
-평촌매장 리뉴얼 공사 및 노후 냉동고 교체로 인한 비용증가
-명학매장 오픈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 및 인건비 증가

2022년 손익계산서(안)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정명	제 38(당)기 원화		제 37(전)기 원화	
I. 매 출 액		7,795,664,602		8,564,005,863
상품매출	7,795,664,602		8,564,005,863	
II. 매 출 원 가		6,015,255,280		6,550,104,143
상품매출원가	6,015,255,280		6,550,104,143	
기초상품재고액	232,149,461		227,535,291	
타계정에서대체액				
당기상품매입액	6,083,140,063		6,599,300,671	
타계정으로대체액	23,626,791		44,582,358	
기말상품재고액	276,407,453		232,149,461	
III.매 출 총 이 익		1,780,409,322		2,013,901,720
IV.판매비와 관리비		2,016,046,114		1,905,043,542
급여	915,528,381		835,602,859	
상여금	9,865,000		27,455,000	
잡급	2,225,880		1,498,440	
퇴직급여	48,000,300		82,901,328	
활동비	17,229,860		18,758,469	
복리후생비	94,143,764		83,768,944	
여비교통비	439,450		386,300	
접대비	2,690,010		200,400	
통신비	61,922,192		57,303,412	
수도광열비	76,917,301		66,208,389	
세금과공과금	2,019,310		1,661,720	
감가상각비	63,308,153		19,448,568	
지급임차료	264,760,000		233,125,970	
수선비	5,000,054		5,273,373	
보험료	12,707,157		12,459,007	
차량유지비	10,481,202		11,231,279	

운반비	52,868,824		61,157,042	
교육훈련비	2,245,635		1,279,784	
도서인쇄비	184,000		192,650	
회의비	8,708,565		8,551,122	
소모품비	17,326,140		10,779,711	
지급수수료	317,711,494		307,356,749	
광고선전비	12,223,903		7,872,674	
판매촉진비	17,539,539		50,570,352	
V. 영 업 이 익		-235,636,792		108,858,178
VI. 영업 외 수익		75,211,041		50,285,475
이자수익	1,958,392		1,207,414	
지자체보조금	59,818,181		43,457,591	
참가비수익			14,000	
판매장려금	7,689,889			
잡이익	5,550,485		5,333,203	
대손충당금환입			120,000	
배당금수익	194,094		153,267	
VII. 영업 외 비용		10,490,612		4,438,358
이자비용	2,330,543		240,338	
기부금	2,909,096		100,000	
재고자산감모손실	74,153		127,756	
유형자산처분손실	568,216		6,000	
잡손실	4,608,604		3,964,264	
VIII.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70,916,363		154,705,295
IX.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5,300,135		21,208,423
법인세비용	-15,300,135		21,208,423	
XI. 당 기 순 이 익		-155,616,228		133,496,872

2022년 재무상태표(안)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정명	제 38(당)기 원화		제 37(전)기 원화	
자산				
I. 유 동 자 산		511,445,901		881,014,607
(1) 당 좌 자 산		235,038,448		648,865,146
현금및현금성자산		99,829,699		532,429,039
매출채권	131,726,248		113,287,203	
대손충당금	(1,130,000)	130,596,248	(1,130,000)	112,157,203
단기대여금		1,000,000		
미수금		580,750		461,920
선급금		268,650		489,000
선급비용		2,730,501		3,327,984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32,600		
(2) 재 고 자 산		276,407,453		232,149,461
상품		276,407,453		232,149,461
II. 비 유 동 자 산		1,547,977,208		1,217,359,780
(1) 투자 자산		868,015,859		804,722,517
출자금		868,015,859		804,722,517
(2) 유형 자산		253,491,349		47,272,263
냉동기기	299,188,941		221,688,941	
감가상각누계액(냉동기기)	(226,541,147)	72,647,794	(182,813,548)	38,875,393
차량운반구	72,075,548		72,075,548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72,071,548)	4,000	(72,071,548)	4,000
비품	80,988,387		65,802,023	
감가상각누계액(비품)	(66,878,555)	14,109,832	(57,872,023)	7,930,000
시설장치	615,471,871		439,562,780	
감가상각누계액(시설장치)	(438,858,858)	176,613,013	(422,889,910)	16,672,870
국고보조금(시설장치)		-9,883,290		-16,210,000

(3) 무형 자산		30,000,000		
영업권		30,000,000		
(4) 기타비유동자산		396,470,000		365,365,000
임차보증금		395,000,000		362,895,000
기타보증금		1,470,000		1,470,000
장기대여금(X)				1,000,000
자 산 총 계		2,059,423,109		2,098,374,387
부 채				
I. 유 동 부 채		632,875,9771		615,149,612
미지급금		105,233,590		94,181,175
예수금		1,533,940		2,433,690
부가세예수금				
미지급법인세				3,106,633
미지급비용		602,615		4,764,022
단기차입금				12,470,000
선수금		17,045,588		19,646,813
포인트충당부채		3,680,345		5,440,871
매입채무		504,779,899		473,106,408
II. 비 유 동 부 채		226,141,367		175,149,062
장기차입금		150,000,000		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72,535,286		205,286,580	
퇴직연금운용자산	(96,393,919)	76,141,367	(80,137,518)	125,149,062
부 채 총 계		859,017,344		790,298,674
자 본				
I. 자 본 금		1,728,446,522		1,680,500,242
조합원출자금		1,728,446,522		1,680,500,242
II. 자 본 잉 여 금				
III.자 본 조 정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 익 잉 여 금		-528,040,757		-372,424,529
법정적립금		4,384,858		4,384,858
미처분이익잉여금		-532,425,615		-376,809,387
당기순손익	-155,616,228		133,496,872	
자 본 총 계		1,200,405,765		1,308,075,713
부채와 자본 총계		2,059,423,109		2,098,374,387

2022년도 예산대비 실적 대비표(안)

계정명	2022년예산(안)	2022년 결산	예산 대비	비고
I. 매 출 액	9,700,000,000	7,795,664,602	80.4%	전년매출대비 91.03%
II. 매 출 원가	7,420,000,000	6,015,255,280	81.1%	매출대비 77.1%
III. 매출총이익	2,280,000,000	1,780,409,322	78.1%	매출대비 22.8%
IV.판매비와 관리비	2,274,000,000	2,029,890,147	89.3%	매출대비 26%
급여	960,000,000	915,528,381	95.4%	인건비인상 및 추가채용
상여금	30,000,000	9,865,000	32.9%	명절 및 연말 성과급
잡급	3,000,000	2,225,880	74.2%	단기근로자 고용
퇴직급여	85,000,000	48,000,300	56.5%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
활동비	30,000,000	17,229,860	57.4%	조합원 활동및 이사 활동비
복리후생비	94,000,000	94,143,764	100.2%	직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외
여비교통비	1,000,000	439,450	43.9%	
접대비	1,000,000	2,690,010	269.0%	
통신비	70,000,000	61,922,192	88.5%	매장 홍보문자외
수도광열비	73,000,000	76,917,301	105.4%	매장 전기료및관리비등
세금과공과금	2,000,000	2,019,310	101.0%	
감가상각비	100,000,000	63,308,153	63.3%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263,000,000	264,760,000	100.7%	매장 및 사무실 임차료
수선비	7,000,000	5,000,054	71.4%	집기비품수리 및 노후시설수리
보험료	15,000,000	12,707,157	84.7%	산재보험.차량및매장관련보험
차량유지비	20,000,000	10,481,202	52.4%	차량유류대 및 수리비
운반비	69,000,000	52,868,824	76.6%	매장배송기사 급여외
교육훈련비	3,000,000	2,245,635	74.9%	직원직무교육외

도서인쇄비	2,000,000	184,000	9.2%	
회의비	12,000,000	8,708,565	72.6%	총회.이사회.직원회의비
소모품비	12,000,000	17,326,140	144.4%	
지급수수료	360,000,000	317,711,494	88.3%	물류대행 및 카드수수료외
광고선전비	10,000,000	12,223,903	122.2%	연합홍보비외
판매촉진비	52,000,000	17,539,539	33.7%	판매촉진활동(포인트지급외)
V. 영 업 이 익	6,000,000	- 235,636,792	-3927.0%	
VI. 영업 외 수익	39,000,000	75,211,041	192.8%	
이자수익	1,000,000	1,958,392	195.8%	
지자체보조금	30,000,000	59,818,181	199.4%	지자체공모사업지원 선정등
참가비수익		-		
판매장려금	-	7,689,889		
잡이익	7,000,000	5,550,485	79.3%	연합회 환급금외
대손충당금환입		-		
배당금수익	1,000,000	194,094	19.4%	
VII. 영업 외 비용	8,000,000	10,490,612	131.1%	
이자비용	2,000,000	2,330,543	116.5%	
기부금	-	2,909,096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00	74,153	7.4%	
유형자산처분손실		568,216		
잡손실	5,000,000	4,608,604	92.2%	독자생활재부과금외
VIII.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7,000,000	- 170,916,363	-461.9%	
IX.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4,000,000	- 15,300,135	-382.5%	
X. 당 기 순 이 익	33,000,000	- 155,616,228	-471.5%	

복 지 기 금

■ 복지기금 현황

구분	기금 입금			기금지출	잔액	비고
	조합원	기타	계			
2011.08~12	690,000	32,000	722,000		722,000	
2012	5,744,000	2,143,743	7,887,743	1,263,629	7,346,114	
2013	6,040,000	2,060,119	8,100,119	658,100	14,788,133	
2014	5,578,000	1,176,075	6,754,075	1,442,000	20,100,208	
2015	4,941,000	1,440,265	6,381,265	900,000	25,581,473	
2016	8,598,027		8,598,027	4,373,127	29,806,373	
2017	1,850,595	878,080	2,728,675	5,285,000	27,250,048	
2018	1,950,000	58,465	2,008,465	2,060,456	27,198,057	
2019	2,151,840	166,104	2,317,944	4,206,390	25,309,611	
2020	1,493,000	75,000	1,568,000	2,627,610	24,250,001	
2021	1,571,000	164,000	1,735,000	9,175,955	16,809,046	
2022	1,922,000	2,328	1,924,328	4,239,593	14,493,781	
누계	42,529,462	8,196,179	50,725,641	36,231,860		

-도움을 주시는 분-

박미자, 이인영, 김금난, 이미현, 이경숙, 남양선, 하은숙, 최금미, 엄선영, 이화정, 강은미, 김현숙, 박윤순, 현영숙, 함연주, 이승희, 김정순, 서원미, 임향순, 안미선, 정혜경, 정효순, 이경미, 정미희, 주연섭, 윤형미, 황희정, 김미정, 구선욱, 양효재, 정서희, 이정우, 권애경, 정숙희,이순주, 장난희, 이정미, 이정혁, 양기남, 배경선 (2022년 12월 기준)

2022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Ⅰ. 이익 잉여금 처분(안)

사업년도 : 2022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1. 처리 전 손실금 : 528,040,757 원
   - 전기 이월 손실금 : 372,424,529원
   - 당기 순손실 : 155,616,228 원
2. 처분(안)

이월 손실금과 당기순이익의 합 -528,040,757 원을 2023년으로 이월한다.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023년도 공통 슬로건

"미래가 있는 두레! 미래를 잇는 두레!"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2023년 매장사업부문

▣ 2023년도 핵심과제

위기를 기회로! 미래가 있는 두레

▣ 2023년도 핵심정책

Ⅰ. 정체성(가치소비)강화

Ⅱ. 매장지원사업 고도화

Ⅲ. 바른두레 경영 내실화

▣ 2023년도 사업계획

1. 매출목표

- 총매출 목표 : 8,200,000,000원
- 매장매출 목표 : 7,350,000,000원-> 전년대비 5% 인상분 반영
- 무점포매출 목표 : 850,000,000원-> 전년대비 5% 인상분 반영
- 마진율 목표 : 25% 달성!

- **2023년 매장 목표**

	매장	2022년 매출액	2023년 목표액	2022년 가입조합원	2023년 가입목표
1	안양점	832,683,236	850,000,000	226	150
2	영통점	1,264,028,414	1,300,000,000	88	150
3	평촌점	1,113,522,438	1,150,000,000	111	150
4	천천점	1,022,171,254	1,050,000,000	112	130
5	동탄점	786,529,286	800,000,000	72	100
6	인덕원점	882,640,076	910,000,000	57	150
7	매탄점	679,567,801	720,000,000	67	100
8	명학점	404,324,426	570,000,000	539	200
9	무점포	810,192,671	850,000,000	146	200
합계		**7,795,659,602**	**8,200,000,000**	**1418**	**1330**

2. 핵심정책

1) 정체성(가치소비)강화

- 바른두레만의 STORY(역사, 존재이유, 신뢰 등) 개발
- 생활재 취급기준의 재정립 및 홍보 (가장 까다로운 취급기준에 대하여)
- 취급기준에 대한 직원 교육
- 바른두레생협 이미지 재고 및 홍보 (젊고 변화하는)
- 'ONE STOP SHOPPING'이 가능한 매장이용 활성화 방안 개발
- 단위생협간 정책 및 가치의 공유와 연대
- '가치소비' 브랜드화 전략 수립
- 연령대별 조합원 세분화 및 NEEDS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조합원 확대)
- '생활재 전문가' 그룹 양성 (스터디 그룹 기획)

2) 매장지원사업 고도화

- 안정적인 생활재 구매 및 신규 생활재 개발
- 생활재에 대한 정보 파악 등 업무 능력 강화 (생활재 전문가 정보 활용)
- 매장(점장) 업무 개선 방안 모색 (자동발주 등)
-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프로그램 확립 (연합회교육 및 단협교육 병행)
- 매장사업부 단위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

- 공공급식(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센터) 거래처 확대
- 매장 행사 확대 및 행사 매뉴얼 개발
- 매장간 협업시스템 구축

3) 바른두레 경영 내실화

- 분야별 표준 및 기준 수립
- 재무안정성(영업이익, 현금유동성) 관리
- 비용 절감 (소모성 비용 최소화)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근로자에 대한 복지 확대 및 인력안정상 확보
- 회원생협간 / 지자체와의 연대사업 강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수익사업 개발
-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 연합회의 컨텐츠 활용 방안 모색
- 적극적 활동 조합원 확보 및 조직활동 확대
- 연대를 통한 안정적인 복지활동 확대

3. 월별 계획

1) 집중 생활재 기획

월	내 용	월	내 용
1월	설선물세트기획, 겨울방학간편식 건강식품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7월	초복/중복기획(전복/토종닭/장어) 여름보양식, 여름과일 기획, 대자리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2월	고로쇠예약, 정월대보름기획, 메주 *월간기획-싱싱수산물	8월	말복기획(전복/토종닭/장어) 여름보양식,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3월	신학기 및 환절기대비 건강식품 기획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9월	추석선물세트 기획, 햇고춧가루 햇수삼/생오미자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4월	햇산양삼, 봄나물, 햇참외 및 햇과일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0월	김장(절임배추/젓갈류/천일염) 예약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5월	가정의 달 기획 행사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1월	햇건구기자, 담근김치 예약, 수능기획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6월	하지감자/청매실/블루베리, 여름김장김치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12월	크리스마스 케익/와인 판매 *월간기획-싱싱수산물, 한우

2) 월별매장 행사

월	내 용	월	내 용
1월	설 명절 행사	7월	천천점 16주년 행사 초복기획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2월	대보름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8월	말복기획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3월	신학기 기획행사/명학점-1주년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9월	매탄점 13주년 행사 추석 명절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4월	영통점-20주년/인덕원점-14주년 행사 조합원확대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10월	전매장 감사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5월	바른두레 38주년 창립행사 책임조합원확대 및 감사행사	11월	조합원 확대 행사 대의원 맞이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6월	평촌점-17주년/동탄점-15주년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행사	12월	안양점 26주년행사/책임조합원 감사행사 연합행사/바른생협 연말행사

2023년 조직홍보부문

1. 2023년 핵심 방향

- 우리와 지구를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든다.

2. 핵심과제

- 성장하는 삶! 내일을 만드는 가치 성장
- 함께하는 삶! 세대를 잇는 배려와 소통의 장
- 가치 있는 삶! 기후위기 저탄소 중립 실천

3. 핵심과제별 주요사업(세부)

1) 성장하는 삶! 내일을 만드는 가치 성장

- 조합원 활동 강화, 온라인 홍보 강화, 가치 성장 강화

① 신규조합원 확대 집중
② 조합원 인적 자원 발굴
③ 두레생협 신규 생활재 요리법 홍보
④ 바른두레생협 창립 38주년 기념행사 계획
⑤ 온라인 시대에 대응하는 조합원 만남 활성화

2) 함께 하는 삶! 세대를 잇는 배려와 소통의 장

- 식생활 교육 강화, 다양한 연령의 조합원과 소통 강화

① 세대별 식생활 교육 확대
②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안 모색
③ 장애인, 임산부 등 이웃을 아끼고 배려하는 가치활동
④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 강화

3) 가치 있는 삶! 기후위기 저탄소 중립 실천

- 자원순환 캠페인에 앞장 서기, 기후위기 실천 교육 강화

① 제로웨이스트 실천 행동
② 자원순환 및 환경 개선 실천 강화
③ 공정무역와 기후위기 연관성 교육
④ 기후위기 인식교육과 실천 방안
⑤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교육

1. 활 동 부 문

목 적	활 동 명	활 동 계 획
조합원 모임 활성화	조합원만남	- 제목: 신규조합원 만남 - 횟수: 12회 - 장소: 온라인 (Zoom)
		- 제목: 생산자 온라인 강좌 - 횟수: 8회 - 장소: 온라인 (Zoom)
		- 제목: (요리) 강좌 - 횟수: 6회 - 장소: 안양 3회, 수원 3회
	신규생활재 체험단	- 8매장(조합원 2인 선정) - 횟수: 10회 - 방법: 생활재 선정(밴드 후기)
	생산지 방문	- 제목: 생산지 방문 및 일손돕기 - 횟수: 6회 - 장소: 미정
	소모임	- 제목: 꽃꽂이, 공정무역, 환경캠페인, 영어 등 - 횟수: 매장별 10회
위원회활동	복지위원회	- 제목: 복지반찬(반찬봉사) - 횟수: 52회 - 안양점 조합원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간편식 생활재 전달”로 대신함
	생활재위원회	- 제목: 생활재위원 검토 - 횟수: 18회 (1,2월 9월 연합회에서 진행안함) - 장소: 사무국, 안양/수원조합원공간
	편집위원회	- 제목: 콩세알 웹자보 회의 - 횟수: 11회 (2월 휴재예정) - 장소: 사무국
교육활동	직원 역량강화	- 조직홍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연합 등 교육(외부)	- 식생활, 공정무역, 기후위기

2. 홍 보 부 문

1) 홍보활동

구분	대상	활동내역 및 계획	
온라인 활동	조합원	홈페이지, 밴드	- 조합원 활동소식 - 생산자 온라인 만남 - 다양한 캠페인 활동 홍보 - 복지반찬 소식 - 총회 등 중요공지
		웹자보(콩세알)	- 월별 중요 소식 - 조합원 참여 알림(월/달력) - 생활재, 생산지, 요리 소개 등
		인스타, 블로그	- 신규 생활재 소개 - 환경 캠페인 등 안내 - 복지반찬 소식
대면 활동	조합원	- 신규조합원 확대 - 책임조합원, 복지기금 안내	

2) 연대활동

(1) 지역연대활동

- 안양시 공정무역 협의회
- 수원시 공정무역 협의회
- 화성시 공정무역 협의회
- 안양시 식생활 네트워크
- 수원시 식생활 네트워크
- 안양시 협동조합 협의회
- 한마당 축제 행사
- 안양시민 연대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먹거리생협네트워크 협의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전국 먹거리 연대
- 기타 활동

(2) 두레연합활동

- 두레연합회 총회
- 이사회

- 지역별 회의
- 실무책임자 회의
- 생활재 선정 회의
- 총무·회계담당자 회의
- 조직홍보 담당자 회의
- 개별나눔 실무 회의
- 그루터기 실무 회의
- 기타 활동

(3) 공정무역활동
- 공정무역 전문가 양성
- 공정무역 인식개선 교육
- 공정무역제품 제품 진열 홍보
- 공정무역 거리 캠페인
- 공정무역 시민단
- 기후위기 강의
- 기타 활동

(4) 기후위기캠페인
- 식생활 채식 강의
- 병뚜껑 수거 재활용
- 멸균팩, 우유팩 모으기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제로웨이스트 운동
- 기타 활동

(5) 국제교류
- 일본 가나가와 생협과 정기교류

2023년 기획관리부문

1. 기관 운영

1) 이사회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의결
- 정관 및 규정 검토 및 보완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의안 심의

2) 감사

- 연 2회 사업과 활동, 회계애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감독 및 지도

2. 조직 관리

■ 조합원 신규가입

	23년 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입 조합원수	1,330	111	110	111	111	111	111	110	111	111	111	111	111

- 신규조합원 가입행사 진행예정

■ 책임조합원 확대

- 신규 조합원 및 기존 조합원의 의 생협 행사 참여기회 증대
- 기존 조합원을 위한 생활재교육 및 두레소식 전달로 생협 활동에 참여유도
- 신규 및 기존 조합원들 대상으로 생협 교육을 통하여 생협에 대한 이해도 향상

3. 대외 연대 활동

■ 두레생협 연합회

-총회
-생활재 선정위원회
-그루터기사업팀회의
-이사회
-두레연합 지역별회의
-개별나눔 담당자 회의
-실무책임자회의
-총무·회계팀 회의
-조직·홍보담당자 회의

■안양지역협동조합협의회 ■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 ■안양지역급식네트워크
■화성공정무역협의회 ■수원공정무역협의회 ■수원지역급식네트워크

4. 인사·총무·회계

1) 경비절감
-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통해 생협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지속적인 지자체 보조금 지원정책의 적극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도모
- 정기 지출 비용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한 효율적 비용사용

2) 각종 지원사업과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영업외 수익창출을 도모

3) 재고 조사
- 매장 재고 조사 및 현금시제 점검을 통한 정확한 손익반영

4) 인사기준 추가정비
-관련 법규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내부 사규의 빠른대응 및 적용 노력

5) 교육

(1) 두레연합 교육
- 더존 교육(인사 및 근태)
- 마케팅 교육(전략교육)
- 초급 실무자 교육
- 임원 교육
- 조직홍보담당자 교육

(2) 법정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괴롭힘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안전 교육
- 퇴직연금교육

(3) 기타
- 세무회계 교육
- 연말정산 교육
-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 점장 리더십 교육
- 신규직원 업무교육

2023년 예산계획(안)

1. 예산총칙

제1조: 본예산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23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수입총액: 2,050,000,000원
-지출총액: 2,103,850,000원
-수지총액:
제3조: 수입 및 지출명세는 다음 수지(안)과 같다
제4조: 예산의 집행은 당해 연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목간이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예산의 항간이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양의 증가, 세율변경, 급격한 물가변동, 특별사업의 실시, 조직체계 및 기구의 변경 기타 대내외 지원금 등으로 인한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수 있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2023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한도는 **3억 원**으로 한다.

2023년 총괄 수지예산(안)

계정명	2022년결산(확정)	2023년예산(안)	2022 대비율	비고
I.매출액	7,795,664,602	8,200,000,000	5.2%	매출 5%신장
II.매출원	6,015,255,280	6,150,000,000	2.2%	매출대비 75%
III.매출총이익	1,780,409,322	2,050,000,000	15.1%	매출대비25%, 단협마진율인상매출총이익증가
IV.판매비와관리비	2,016,046,147	2,103,850,000	3.6%	매출대비 24.9%
급여	915,528,381	952,000,000	4.0%	**직원인건비인상 및 신규채용등**
상여금	9,865,000	-	-100.0%	
잡급	2,225,880	-	-100.0%	
퇴직급여	48,000,300	95,750,000	36.0%	급여인상으로인한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증가
활동비	17,229,860	18,500,000	7.4%	조합원 활동증대
복리후생비	94,143,764	94,000,000	-0.2%	직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외(급여인상등)
여비교통비	439,450	450,000	2.4%	
접대비	2,690,010	3,050,000	13.4%	

통신비	61,922,192	62,000,000	0.1%	매장 홍보문자외
수도광열비	76,917,301	80,000,000	4.0%	매장 전기료및관리비등
세금과공과금	2,019,310	2,000,000	-1.0%	
감가상각비	63,308,153	45,000,000	-28.9%	2022년 시설투자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264,760,000	263,500,000	-0.5%	
수선비	5,000,054	5,600,000	12.0%	집기비품수리및노후시설수리
보험료	12,707,157	13,500,000	6.2%	산재보험. 차량 및 매장관련보험
차량유지비	10,481,202	10,000,000	-4.6%	
운반비	52,868,824	55,000,000	4.0%	매장 배송기사급여외
교육훈련비	2,245,635	3,000,000	33.6%	직원 직무교육외
도서인쇄비	184,000	500,000	171.7%	
회의비	8,708,565	10,000,000	14.8%	이사회 회의비인상,직원회의비
소모품비	17,326,140	15,000,000	-13.4%	
지급수수료	317,711,494	330,000,000	3.8%	물류대행 및 카드수수료외
광고선전비	12,223,903	15,000,000	22.7%	연합 홍보비외
판매촉진비	17,539,539	30,000,000	71.0%	판매촉진활동(포인트지급외)비증대
V.영업이익	-235,636,792	-53,850,000		
VI.영업외수익	75,211,041	63,250,000		
이자수익	1,958,392	250,000		
지자체보조금	59,818,181	56,000,000		사경지원금
참가비수익	-	-		
판매장려금	7,689,889	-		
잡이익	5,550,485	7,000,000		
대손충당금환입	-	-		
배당금수익	194,094	-		
VII.영업외비용	10,490,612	9,500,000		
이자비용	2,330,543	3,500,000		
기부금	2,909,096	-		
재고자산감모손실	74,153	1,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68,216	-		
잡손실	4,608,604	5,000,000		
VIII.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70,916,363	-100,000		
IX.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5,300,135	-		
X.당기순이익	-155,616,228	-100,000		

2. 자본(조합원출자금)예산안

*2022년 조합원 출자금(자본금) 변동현황

내 역	금 액		비 고
이월잔액	1,680,500,242		2021년12월31일 기준
탈퇴	(70,651,972)		
가입	31,560,000		1,409 명학302 축제55 제외
책임출자금총액	38,450,000		
(직원)		17,860,000	
(조합원)		20,590,000	
이용	48,588,252		
잔액		1,728,446,522	2022년12월31일기준

*2023년 조합원 출자금(자본금) 변동현황

항 목	산 출 근 거	예 산 안	산 출 근 거
조성		151,960,000	
출자금	조합원신규가입	39,960,000	조합원신규가입 (월 111*12개월*30,000)
	조합원탈퇴	-30,000,000	조합원탈퇴 및 감자 (월 250만원*12개월)
	이용 출자금	100,000,000	출자금 의무증자
	책임출자금	18,000,000	직원책임출자금 (월 150만원*12개월)
		24,000,000	조합원책임출자금 (월 200만원*12개월)
운용		140,800,000	
시설투자	보증금 및 시설장치	80,000,000	조합원공간 보증금 및 인테리어공사
	차량 및 냉동기기	28,000,000	차량 및 매장 냉장 냉동기기
	비품	10,000,000	냉난방기 및 컴퓨터주변기기
연합출자금		22,800,000	월 190만원*12

제4호 의안	2023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Ⅰ. 차입금 최고한도액(안)

1. 제안사유

-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차입금 최고한도액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1-1. 관계조항

- 정관 제 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0-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2023년도 차입금 최고한도액을 3억 원으로 한다.

제5호 의안	안양본점 등기이전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안양본점 이전 및 사업장소재지 등기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양본점 이전 상세 내용

(변경전)

사업자등록번호 : 123-82-08994

법인등록번호 : 134171-0001436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1,2층 (안양동)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1,2층 (안양동)

(변경후)

사업자등록번호 : 123-82-08994

법인등록번호 : 134171-0001436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108호, 109호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108호, 109호

제6호 의안	임원선출 및 승인의 건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임원선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5인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회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

- 이사 : 8명
- 감사 : 2명
- 사유 : 임원의 임기 만료

■ 임원 입후보 (이사 후보)

기호	성 명	지 원 포 부
1	김란희	지금까지 참여했던 다수의 조합원활동 경험을 살려 많은 조합원님꽈 다양한 생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박선희	바른두레새협의 이사로서 생협과 종사자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신동석	오랫동안 생협의 조합원 및 감사로서 활동했던 경험으로 바른두레생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윤형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성화하여 조합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며 매출증대에 기여토록 활동하겠습니다.
5	이상영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른두레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이정우	지역에서 생명운동의 가치를 확산시켜가기 위해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	주선미	생활재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조합원활동에 참여하고 바른두레생협이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한대건	바른두레생협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협동조합안에서 바른두레생협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임원 입후보 (감사 후보)

기호	성 명	지 원 포 부
1	임상옥	새협의 회계 및 세무 업무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새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전준범	바른두레생협의 사업이 조합원에게 유익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두레생협의 사업진행이 법령, 정관, 규약 등에 비추어 적법하고 타당한지 성실히 살펴보겠습니다.

제7 의안	정관개정(안) 승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표준정관례의 개정에 따라, 바른두레생협 정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 개정에 따라, 정관을 참조하는 각 규약의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 함께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서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안)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68-25번지**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32번지**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안양본점이전
제28조(임시총회) ① (생략)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1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8조(임시총회)** ① (생략)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3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 4. (생략)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10. (생략)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10. (현행과 같음)	
제3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④ (생략)	**제31조(총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④ 생략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제33(의결권 및 선거권) ①~④ 생략 ⑤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제34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이 제33조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 제33조제5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33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④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35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제33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 방법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 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4조 ~ 제38조(생략)	**제36조 ~ 제40조(현행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제5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③ 생략 **④ (신설)**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③ 생략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1조 ~ 제61조 (생략)	**제43조 ~ 제63조 (현행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와 같음)**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2조 ~ 제64조(생략)	**제64조 ~ 제66조(현행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와 같음)**	
제6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	**제6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	

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생략)	**제68조(현행 제66조와 같음)**	

규약변경(안)

① 총회운영규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원선거규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3조, 제41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5조, 제43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설치운영규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 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1조** 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잉여금배당규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2조** 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4조** 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 개정(조항 변경)에 따른 규약의 변경(실제 내용의 변경은 없음)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 제9조)
제2장 조합원 (제10조 ~ 제16조)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 ~ 24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 ~ 제41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2조 ~ 제54조)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5조 ~ 제57조)
제7장 회 계 (제58조 ~ 제62조)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3조 ~ 제66조)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바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68-25번지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경기도와 서울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가 포함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신설)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다시 가입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 여부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신설)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신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월의 6개월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신설)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용출자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출자의 금액 및 방법,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⑥ (신설) 수매, 홍보, 시설투자,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문화, 환경 사업, 성평등사회 조성 등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 사업 및 생협운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목적을 위한 특별출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2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신설) 조합원이 공급, 매장 이용 시 발행되는 공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제1항 각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신설) 공급수수료(또는 배송수수료)
2. (신설) 행사참가비
3. (신설) 가입비
4. (신설)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반 경비로 이사회에서 정한 것

② 조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20분의 1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1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또는 SNS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2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설) 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전에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설) 조합은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의 총회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가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로써 총회의 의사록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5인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0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1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추가 보완)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사업상의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5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추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10. (추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11. (추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2. (추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지원 및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복지, 환경, 문화 사업
13. (추가) 성평등 문화 확산, 인식 개선, 여성인권 향상 등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14. (추가) 조합원의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식생활교육 및 외식사업
15. (추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사업 및 복지사업
16.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과 영유아보육사업
17. (추가) 그 밖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제5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신설) 협약에 의해 상호 이용을 약속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8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1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3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4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 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대의원선출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또는 구성원 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원단위 (또는 구성원 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다만 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임원선거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1항의 후보자격심사시 이사후보자의 자격은 가입기간 2년이상과 생협의 주요 운영 및 활동에 1년이상 참여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후보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 및 3항에 따른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 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제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 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3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4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6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18조 3항으로 이전

제27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설치·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출자좌수 감소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0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잉여금배당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2조 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이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배당계산자료)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출자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말 출자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월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좌수로 나누어 1월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좌수에 1월좌당 배당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한다.

제7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승인이후 차기 총회부터 시행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채하거나 태만할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ㄹ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변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승인이후 차기 총회부터 시행한다.

"함께하는 이웃, 협동으로 삶을 풍요롭게"

바른두레생협 매장

안 양 점 :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마인빌 108, 109호 바른두레생협	031)468-2800
평 촌 점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인덕원점 :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명 학 점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4 (안양동, 안양 센트럴 헤센)128호, 129호	031)466-8899
영 통 점 :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천 천 점 :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매 탄 점 :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동 탄 점 :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전화주문 : 1533-1985

바른두레생협

www.baruncoop.co.kr

대표전화 031)444-6665